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891-01

최종보고서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2011. 3.

최종보고서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2011. 3.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류 정 곤

연 구 진 : 강 종 호

임 경 희

정 명 화

남 수 민

이 승 진

강 주 리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제2장 수산발전기금의 환경 분석	3
1. 기금정책의 변화	3
1) 기금의 정의 및 기능	3
2)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6
3) 기금의 성격 및 운용	7
4) 기금정책의 변화	11
5) 기금의 문제점	12
6) 기금의 개선 방향	13
2.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15
1)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15
2)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16
3.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20
1)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20
2)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25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29
1. 국내 사례	29
1) 국내 농림수산기금 현황	29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8
3) 축산발전기금	42

2. EU의 수산기금	48
1) 유럽수산기금의 개요	48
2)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종류	50
3)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54
4) 시사점	57
제4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분석	59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59
1) 개요	59
2) 연혁	60
3) 기금 운용체계	60
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64
1) 기금사업의 용도	64
2)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65
3) 자원 조성	69
4) 운용 현황	71
3.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75
1) 기금사업의 운용 평가	75
2) 기금사업 존치 평가	79
제5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 방안	85
1.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85
1) 기본 방향	85
2) 사업체제 개편 방향	86
2. 사업체제 개선 방안	87
1) 자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87
2)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89
3)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90
3.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92

1)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92
2)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101
4. 신규사업 발굴	103
1)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및 개요	103
2) 단기 신규사업	106
3) 중장기 신규사업	111
제6장 결 론	113
부 록	117
1. 수산발전기금 관련 법률	117
2.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142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기금 현황	7
<표 2-2> 기금과 예산의 비교	8
<표 2-3> 기금 운용규모의 추이	11
<표 2-4> WTO/DDA 의장 안, 우리나라 및 일본 제안서 비교	17
<표 2-5> 우리나라 국가 전체 및 농림수산물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20
<표 2-6> 농림수산물부 소관예산의 회계별·분야별 동향	21
<표 2-7>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정책보조사업 종류(2011년 예산 기준 작성) ..	22
<표 2-8> 우리나라 수산회계종류별 예산 규모	24
<표 2-9> 우리나라 수산부문 지원형태별 예산 규모	24
<표 2-10> 수산어촌부문의 단위사업별 보조 현황	26
<표 2-11> WTO/DDA 의장 안에 따른 수산보조금 분류(2010년 기준)	27
<표 2-12> WTO/DDA 의장 안에 따른 회계별 수산보조금 분류(2010년 기준) ..	28
<표 3-1> 농림수산분야 기금 현황	29
<표 3-2> 농림수산분야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	30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개요	31
<표 3-4>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개요	32
<표 3-5> 농지관리기금의 개요	33
<표 3-6> 수산발전기금의 개요	34
<표 3-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개요	35
<표 3-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개요	36
<표 3-9> 축산발전기금의 개요	37
<표 3-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과 용도	39
<표 3-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39
<표 3-1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사업 현황	40
<표 3-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별 현황(2010년 기준)	42

<표 3-14> 축산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동향	43
<표 3-15> 축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43
<표 3-16>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44
<표 3-17> 축산발전기금 운용사업 현황	45
<표 3-18> 축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별 현황(2010년 기준)	46
<표 3-19> FIFG의 지원사업	49
<표 3-20> EFF의 지원사업	50
<표 3-21> EU 회원국의 분야별 수산기금 현황(2008년 기준)	56
<표 4-1>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66
<표 4-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종류(최근 3년)	68
<표 4-3>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69
<표 4-4> 수산발전기금의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70
<표 4-5> 수산발전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2010년)	71
<표 4-6>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 규모 및 집행 현황	72
<표 4-7>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규모 및 집행 현황	73
<표 4-8> 기금별 여유자금 현황	74
<표 4-9> 경제 분야 13개 기금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76
<표 4-10>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별 운용 평가 결과	76
<표 4-11> 어업경영자금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77
<표 4-12>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78
<표 4-1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78
<표 4-14>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별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79
<표 4-15>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81
<표 5-1> 농안기금 및 축발기금의 사업통합 사례	89
<표 5-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통합(예시)	90
<표 5-3>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운영 평가 결과(2009년도)	90
<표 5-4>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안(예시)	91
<표 5-5> 수산발전기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93

<표 5-6> 예산사업 전환 대상의 추진방안	94
<표 5-7> 조정 대상사업의 추진 방안	96
<표 5-8> 수산발전기금과 농안기금의 금리 비교	99
<표 5-9> 수산발전기금의 금리 조정 방안	100
<표 5-10> 수산발전기금의 종합자금제도 도입(안)	102
<표 5-11> 수산발전기금 발굴 신규사업 개요	104
<표 5-12> 수산발전기금 사업개편(안)	105
<표 5-13> 정부 비축 및 민간수매비축(안)과의 차이점	106
<표 5-14> 수산물 민간비축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07
<표 5-15> FPC의 선정 요건	108
<표 5-16> FPC의 필요시설	108
<표 5-17> FPC 건립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08
<표 5-18> 산지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10
<표 5-19>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신규사업 개요	111

그림 목 차

<그림 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	10
<그림 2-2>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유형별 구성비(2010년 기준)	25
<그림 2-3> 수산어촌부문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용(2010년 기준)	26
<그림 2-4>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비교(WTO 의장안과 한국 측 제안서)	28
<그림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비 추이	41
<그림 3-2> 축산발전기금의 사업비 추이	46
<그림 3-3> 유럽수산기금의 분야별 지원 비중	55
<그림 4-1>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주체 및 사업체계	61
<그림 4-2> 수산발전기금의 관리운영주체 및 체계	61
<그림 4-3>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집행체계	62
<그림 4-4>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집행체계	63



요 약

제1장 서론

- 2001년 최초로 운용된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 유일의 기금으로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특정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10년 기금준치평가에서 사업의 중복성·유사성·광범위성, 사업추진 적절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특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향후 기금사업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되었고, 특히 WTO/DDA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수산보조금 사업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인 기금관련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수산발전기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체제 개편 방안 수립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2장 수산발전기금의 환경 분석

1. 기금정책의 변화

1) 기금의 정의 및 기능

(1) 정의

○ 일반론

- 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 외로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됨

○ 국가재정법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음(동법 제5조제2항)

(2) 기금의 기능

○ 경기조정 기능

- 어떤 경기 국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정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활동수준에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

○ 자원배분 기능

- 농수산, 중소기업건설 등 사업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원을 제공해 주며, 또는 보훈사업, 환경오염방지, 산재예방 등 사회복지분야에 자원을 공급해주어 예산에서 자원배분이 미치지 못한 사회정책분야를 개발·육성

○ 금융적 기능

- 민간금융에 대해서 양적·질적으로 보완하는 재정기능

- 기금의 긍정적 측면
 - 외부경제효과가 높거나 국민경제의 전략부문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
 -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양적 확대 및 보완기능 수행
 - 사업량이 가변적인 재정사업을 기금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의한 일반회계 규모 확대 억제
- 기금의 부정적 측면
 - 정부회계와는 달리 자원부족시 기금이 파산될 가능성이 있음
 - 세입·세출 이외의 자금으로서 재정팽창 우려가 있음

(3) 기금의 분류 및 재원

- 기금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관리 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
 - 민간관리 기금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법인이 관리주체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 사업 및 관리기금 : 정책사업 기금, 예산과 성격 유사
 - 계정성 기금 : 용자 기금, 미사용시 회수
 - 연금성 기금 : 보험사업성 기금, 유사시 사용, 국민연금기금 등
- 운용방식에 의한 분류
 - 소비성 기금
 - 회전 기금
 - 준비성 기금

2)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 기금은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사회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우리나라 기금제도 변천
 - 1961년 12월 :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한 예산회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
 - 2003년 12월 : 기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기금준치 평가제도가 도입
 - 2006년 10월 :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기금관련 사항은 동법으로 통합되어 관리

[우리나라 기금 현황]

단위 : 개

연 도	1961	1980	1990	1993	1999	2002	2003	2010
기금수	3	45	98	114	75	58	60	63

주 : 2002년까지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합한 수치임.
 2010년 기금 중 금융성기금은 11개이고 순수기금은 52개임.
 자료 : 배득중,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3.p.360.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현황, 2010. 6.

3) 기금의 성격 및 운용

(1) 기금의 성격

- 기금은 광범위하게는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연계되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사전의결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됨
- 그러나 정부예산회계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신속성 있게 운용되어 재정민주주의의 예외사항으로 사전의결의 원칙과 상이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중성을 가짐
- 일부 기금의 경우 조세에 준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으로 재원의 일부를 조성하며 종합재정수지 및 정부 내 통화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비슷함

(2) 기금과 예산의 비교

- 기금은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연계되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사전의결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함
- 또한 정부예산회계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되어 설립 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의 예외사항으로 사전의결의 원칙과 상이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중성을 가짐

[기금과 예산의 비교]

구 분	기 금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 설치 사유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총당
2. 재원조달 및 운용 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 원으로 용자사업 등 사업 수행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 일반회계 외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3. 확정 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조정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좌 동
4. 집행 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 좌 동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 변경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 시 국회의결 필요	· 추경예산편성	· 좌 동
7. 결 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 동	· 좌 동

자료 :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2003년도 기금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12, p.84.6.

(3) 기금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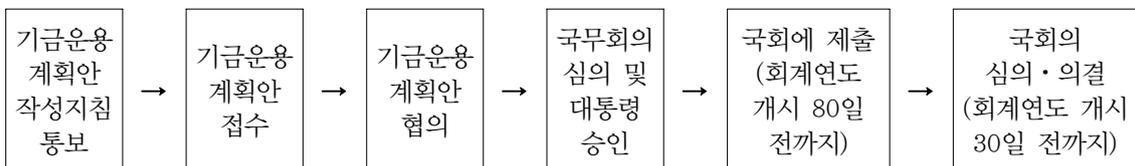
- 기금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 임의출연금, 부담금, 외부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 있음
- 정부출연금은 개별 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불 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 시 제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민간 임의출연금은 관련법에 민간 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함
- 부담금은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한 경우와 불특정한 경우로 구분됨. 특정 부담금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불특정부담금은 부가모금, 과징금 등임
- 외부차입은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기금운용수익은 여유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이 있음
- 기타세입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전입이나 기타 잡수입 등이 있음

(4) 기금의 운용

- 기금 운용관리주체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국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는 국회법에 의거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

4) 기금정책의 변화

(1) 국가재정정책의 변화

-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요구 증대에 따라 건전재정 기초 정착, 성장과 분배를 조화한 자원배분, 성과관리 중심 등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강화
 -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기금존치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금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강화되어 2000년대 많은 기금의 통폐합 추진
- 성과예산관리제도 도입
 - 1999년 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 부처에 성과관리제도 도입

(2) 기금정책의 변화

- 2000년대 기금 관리 강화
 - 2000년 국회예결회 상설화
 -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구분 폐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기금존치 평가제도 도입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예산과 기금 통합 관리

5) 기금의 문제점

(1) 기금설치상의 문제

- 기금의 지나친 수적·양적 팽창
- 일반·특별회계와 중복 및 연계성 미흡

- 유사기금의 중복 설치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별 모호
- 통합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

(2) 기금운용상의 문제

- 종합적인 협의체제의 미흡
-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문제
- 기금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체제의 미흡
- 기금운영의 자의성

(3) 기금통제장치의 미비로 인한 문제

- 기금운용에 대한 법적 규정의 미비
- 국회차원에서의 통제장치 미흡

6) 기금의 개선 방향

(1) 기금의 정비

- 유사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추진
 - 기금간 명칭 및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과 더불어 특별회계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통·폐합하거나 단순화시켜 통합 관리
- 일부기금의 공공기금화 방안 강구
 - 임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금분류를 지양하고 기금의 성격, 자원 조성 방법, 기금운용의 효과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평가
- 기금신설의 억제방안 강구
 -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금설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2)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 공공자금 관리의 통합 관리
 - 개별기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예탁기금의 확대, 예탁금리의 실세화 및 규모산정의 적정화
- 통합적 협의체제 설치 필요
 -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전체 재정운용의 구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제 구축
- 기금조성방법의 개선
 - 공공기금은 민간 강제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응익원칙에 의거하도록 하고, 기타기금의 재원은 민간출연에 의하여 조성되도록 유도
 - 기금 재원 조성의 객관화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 강제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될 경우 그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도의 도입 검토
- 국회의 기금통제 강화
 -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승인 권한 부여

2.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1)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피쉬 프렌즈 그룹(FFG, Fish Friends Group)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됨
-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2007년 11월 규범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보조금 협정 의장안을 발표함

- 2008년 12월 규범의장이 주요쟁점에 대한 질문서(로드맵)를 제시, 1년간 논의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커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론 없이 종료됨
- 2010년도에는 텍스트에 기초한 협상이 진행됨
-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WTO 라미 사무총장이 2011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 분야별 협상 가속화를 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
 - 수산보조금 협상도 Lamy 사무총장이 2011년 4월까지 새로운 협정 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 의장 안에 따르면 금지보조금의 범위는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⑥소득 보전 ⑦입어료 ⑧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임
 - 이 같은 의장 안에 대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 국가는 의장 안을 지지하는 강경입장이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 대폭 축소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하고 있음
-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S&D)와 관련해 칠레, 브라질 등 강경 입장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FFG 및 EU 등 대다수 회원국은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대우 요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소규모 어업과 관련해서 의장안은 개도국에 대하여만 소규모 어업 보조금을 자국 EEZ내 어업에 대하여 허용토록 규정하였음
 - 공조국(한국, 일본, 대만,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선진국에 대하여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것을 주장함

- 미국 등 대다수 FFG는 선진국의 소규모 어업 예외 허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그 예외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여야 한다는 입장임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과 관련, 한국, 일본, EU 등 공조국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라는 입장임

[WTO/DDA 의장제안서와 우리측 제안서 비교]

분 류	의장 안('07. 11)	우리나라 제안서('10. 9)
금 지 보조금	① 선박 간·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운영비 ④ 항구 기반시설 ⑤ 소득 보조 ⑥ 가격지지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⑨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	① 선박 간·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⑨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
일반 예외	※ 어업관리조건 <선박 간·개조 금지 예외>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획능력 증가 금지 조건 <운영비 금지 예외> ○ 어획능력 증가 금지 조건 ○ 어업 운영비 중 인건비(진적 또는 조기은퇴) <금지보조금 예외> ○ 감척 또는 어획능력 감축 프로그램 ○ 이용자 특정 할당제도	※ 어업관리조건 <선박 간·개조 금지 예외>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획능력 증가 금지 조건 <정당한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 보조금> ○ 어민 전직 또는 전직교육 ○ 어업종사자의 조기은퇴 ○ 생계형 어업 <금지보조금 예외> ○ 감척 또는 어획능력 감축 프로그램 ○ 이용자 특정 할당제도

3.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1)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 농림수산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약 18조 원으로, 국가전체 지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출액은 약 15조 원으로, 국가전체의 지출의 4.8%를 차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재정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규모는 14조 8,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는데,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가 5조 3,316억 원으로 전년대비 5.5% 가량 증가하였음
 - 수산업·어촌에 대한 예산은 1조 2,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타 분야에 비해 감소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을 기준으로 수산분야의 사업 대부분은 수산·어촌분야이며, 이외에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기반 구축, 가격 안정 등에 관련된 일부 사업이 있음
- 2011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수산부문의 예산규모는 1조 2,98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감소하였는데, 예산일반지출이 전체의 57%, 수산발전기금이 43%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일반지출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27%, 농특회계가 40%, 광특회계는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회계종류별 사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수산경영관련 정책사업이 7.1%,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분야가 4.6%의 비중을 차지함
 - 농특회계에서는 어촌어항 개발 분야의 예산이 5.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임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전체의 16.6%로 비중이 크나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수산경영사업은 ‘어업인 영여자금’이 공자기금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정책보조사업 종류(2011년 예산 기준 작성)]

분 야	프로그램	세부사업
수산어촌	수산경영	어업인영여자금공급,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생계소득 및 안정, 소득보전직불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수산 자금이차보전, 수산장비(임대)활용, 수협경영정상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양식어업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폐업지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면세 기자재, 어업용 면세유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사업단지지원,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 내수면자원조성,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조성, 수산어업 행정지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 어업정보통신지원, 어업지도단속, 어업협정이행, 연근해어선감척,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육성, 적조피해직접양식어류방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총허용어획량(TAC)제도운영,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친환경어구보급,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해양심층수활용 시설지원,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가공시설및운영지원,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비축사업,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수산동물질병관리,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위생관리, 수산물이력제 도입, 수산물자조금지원(출하조절),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 수산시장시설개선, 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 연근해어장환경개선, 우수수산물지원, 인천수산물물류가공센터,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
	원양협력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지원, 연안국과의 협력, 원양어업 활성화
	어촌어항 개발	국가어항건설, 국가어항관리, 대포항 건설, 어촌관광활성화
	수산연구	수산생물방역및검역체제구축, 수산시험연구, 수산연구시설및선박관리
	해양환경	해양환경 보전
농업농촌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어업기반구축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안전수산물공급체계구축, 웰빙포고 넓치브랜드개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참고 작성

- 지원형태 기준으로는 보조사업이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세임
 - 반면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형태인 용자사업은 전체 예산규모의 34%로,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9% 가량 증가하였음

2)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운용 규모(2010년 기준)는 약 2조 1,604억 원으로, 이 중 면세유와 면세기자재에 대한 보조가 전체 보조금 운용 규모의 약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원형태별 비중은 경상사업이 7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재원별로는 면세유와 면세기자재로 구성된 기타항목이 전체의 37%,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이 24%의 비중을 차지함
- 사업별로는 수산어촌부문의 보조금 규모가 전체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수산경영 항목에 대한 보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경영 항목 내에서도 면세유와 면세 기자재에 대한 보조가 수산경영사업의 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의 경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 수매지원과 같은 용자형태의 지원이 86%를 차지하고 있음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항목에 대한 지원은 전체가 보조형태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어촌어항 개발 항목의 경우 농특회계에 의한 국가어항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보조금과 관련해 의장초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을 분류해 보면 2010년의 경우 전체의 73%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됨
 - 면세유 등의 운영비가 금지보조금 전체의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격지지에 관련된 보조금도 전체의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반예외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전체의 14%에 불과한데, 어업관리제도 이행에 관련된 보조금의 비중이 일반예외 항목 전체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세부사업의 대부분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로 이루어짐
- 회계유형별로 보면 금지보조금의 경우 면세유와 기자재로 구성된 기타항목이 전체의 51%이며,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이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예외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경우 농특회계가 전체의 4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반사업이 30%, 수발기금이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에 한정해 보면 83%가 금지보조에 해당하며, 11%만이 일반예외에 속함
 - 금지보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로 수매지원, 비축사업과 같이 수산물 가격 지지에 관련된 사업과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과 같은 어선건조수리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됨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기금은 총 8개로 2011년 예산기준으로 약 7조 원에 이룸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설치목적

- 농림수산분야 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농수산물의 가격 조절 및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 등의 출하 촉진·시설 및 운영, 상품성 제고, 자조금 및 유통명령 이행자 지원, 수매 또는 몰수농산물의 이관, 비축 및 종자생산 사업, 기금관리 하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의 추진에 이용됨
- 농안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용·관리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음

(2) 재원조달 현황

- 농안기금의 조성규모는 2010년 현재 2조 2,298억 원으로,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몰수농산물 등 납입액, 타기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의 비중이 재원의 9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융자원금 회수가 58%, 다음으로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농산물 판매수입이 28%를 차지함
 - 2005년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정의존도가 낮고 자금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기금 사업 현황

- 농안기금의 추진사업은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사업은 산지 및 소비지유통 활성화 사업이 전체 사업비(2010년 기준) 중 약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사업비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남
- 지원 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용자사업이 전체의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농안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는 0~4%까지 사업별로 다양한데, 3% 이상의 사업수가 10개로 대다수를 차지함
 - 사업금액 기준으로는 3~4%대의 사업비가 전체의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1~4% 대인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약 39%를 차지함

(4) 기금 사업의 특징

- 농안기금의 주요 사업은 가격안정사업과 산지 및 소비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효율화사업으로,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 도모라는 공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기금사업으로서의 특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조달방법이 사업목적과 연계되고 재원규모와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금사업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식품산업 육성 등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있음
 - 주요 사업 이외에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금의 역할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식품산업 육성, 수출 진흥 등의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2) 축산발전기금

(1) 설치목적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수급 원활화, 가격 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76년 운용되기 시작함
 - 주요 사업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 개량 및 경영 개선, 축산물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자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등임
- 주무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이며,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2) 재원조달 현황

- 축발기금의 재원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7천 223억 원으로, 한국마사회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대체초지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 한국마사회장 특별적립금 중 기금출연금으로, 축산물과 관련된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의 비중이 재원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용자원금 회수가 전체의 55%, 그리고 마사회납입금이 24%를 차지함
 - 마사회이익금 출연율을 당기순이익의 48%에서 56%로 상향하여 수입원을 적극 확충하고 2000년 중반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이 전무한 등 재원 조성 방법과 안정성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3) 기금 사업 현황

- 축발기금은 1990년대 이후 사업 수요의 증가로 축산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기금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축발기금의 사업분야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이용, 축산자조금 지원 등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사업 상당 부분을 망라하고 있음

-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 제고'로 2010년 기준으로 전체사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축산 지원'이 17%, '수급 관리'가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촉발기금 사업비 중 용자사업과 경상사업의 규모는 2009년 이후 경상사업의 비중이 높음
- 이 중 용자사업의 운용 현황을 보면 대출이자율은 0~4%까지 사업별로 다양함
 - 3% 대출이자 사업의 개수가 많으나, 사업액 기준으로는 0~4%대 사업이 전체의 54%를, 다음으로 3~4%대의 사업도 전체의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용자사업의 상환기관은 10~15년 이상의 장기상환 사업(3년 또는 5년 거치)을 비롯해 중장기의 상환기간을 설정한 사업의 분포도가 높은 편임

(4) 기금 사업의 특징

- 촉발기금은 당초 축산분야에 관한 정부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광범위한 사업 운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으나, 사업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금사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화를 완료하거나 이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조성재원의 경우 규모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 개발로 기금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례로 자체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2009년 5월)으로 이익금 출연율을 인상하는 등 재원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2. EU의 수산기금

1) 유럽수산기금의 사업 개요

- EU는 2002년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개편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수산업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럽수산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EFF)을 마련하였음
- EFF 총 예산은 2007~2013년 총 7년간 43억 유로이며, EU의 모든 회원국이 신청가능하나 저개발지역(less developed regions)에 우선 지원됨
 - 특히 기금 총 조성액의 75%에 해당하는 32억 유로는 ‘convergence objective’ 지역, 즉, 1인당 국민총생산이 EC 평균의 75%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에 배정됨
- 유럽수산기금은 전신인 수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시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EFF로 대체되었음
 - FIFG보다 유연함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EFF는 자원회복계획을 비롯해 수익창출모델 개발, 지역균형발전(conversion)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양식수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FIFG하에서는 신규어선건조 또는 어선세력 증강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EFF는 국가, 광역, 지자체의 예산 지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일정부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2) 유럽수산기금의 사업 종류

- EFF의 기금사업은 크게 5개 분야(5 priority axes) 19개 사업으로 분류됨
- 첫째(priority axis 1), 어선의 적응조치분야로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자원의 장기 이용을 위한 어획노력이 주요한 골자이며 6가지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조업영구중단사업, 잠정적조업중단사업, 어선투자지원사업, 연근해소규모어업지원사업, 사회경제적보상사업, 수산후계자지원사업 등임
 - 특히 어선투자지원사업은 5년 이상된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설치하는 어

선주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어선가치, 선령, 톤, 동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됨

- 둘째(priority axis 2)는 양식업, 내수면어업, 수산가공업 및 마케팅지원분야로 6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음
 - EU 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 소비되는 수산물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세부사업에는 양식업 투자지원사업, 수산환경보호사업, 국민건강보호사업, 동물건강보호사업, 내수면지원사업, 수산업의 가공 및 마케팅지원사업 등이 있음
- 셋째(priority axis 3)는 공동이익사업(measures of common interest)으로 총 6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음
 - 공동이익사업, 수산생물자원의 보호 및 개발사업, 어항·양륙지 및 대피소 설립사업, 수산물 수출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사업, 수산물홍보캠페인사업, 수산혁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어선의 용도 변경을 위한 현대화사업 등임
- 네 번째(priority axis 4)는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부분임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은 15~8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수산업 대표 및 민관 대표가 지역단체(local group)를 형성해 특정사업을 수행함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수익성, 환경, 사회 복지(social welfare) 세 가지 측면에 근거해야 함
 - 또한 전략적으로 경제활동 창출 또는 재개발 목적으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코관광지역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연적 또는 건축 유산 발굴, 수산업 내외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 다섯 번째(priority axis 4)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분야임
 - EFF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지원 사업으로 EC는 매년 EFF 예산(총 3470만 유로)의 최대 0.8%를 사업시행에 지원함
 - 또한 EC 회원국의 모든 지역이 통합 목적 하에 있는 만큼, 회원국은 EFF 기금을 사용하여 수산분야의 행정능력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3)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 2007년 EFF 기금이 설치된 이후 현재 19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08년 기금의 지역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된 금액의 79%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저개발지역(regional convergence)에 지원되었음
- 사업부문별 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priority axis 1,2,3 분야에 기금이 골고루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3분야인 양식·내수면·수산가공업및마케팅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전체 기금의 30% 차지, 11억 6천 유로)
- 회원국의 분야별 기금 사용 현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EU 가운데 수산업이 가장 발달한 스페인의 경우 EU 전체 기금의 26.3%인 11억 유로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priority axis 1,2,3 분야에 각각 35%, 30%, 27% 등 골고루 지원되고 있음

4) 시사점

- EU 지역의 수산기금 EFF는 과거의 FIFG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FIFG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EFF는 어획노력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일반예외에 해당하는 어선과 선원의 안전 및 어획능력 증가 금지조건과 관련된 것임
 - FIFG하에서는 어선폐기, 어선 제3국이전, 합작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EFF하에서는 어선감척 뿐만 아니라 어선의 지속적 이용 및 친환경어구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어선의 안전 및 선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되고 있음
- 더불어 어선의 적응조치부문에서 연근해 소규모어업지원사업 및 사회경제적 보상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에 대해 복지 차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국내 수산발전기금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EFF 기금 운영에서 양식·내수면·수산가공및마케팅지원사업이 전체 기금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 역내 수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수산기금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연근해 소규모어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수산업의 기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향후 WTO 금지보조금 항목으로 포함될 개연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친환경수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구 사용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제4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분석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 수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 당시 5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9개의 경상사업과 10개의 용자사업으로 성장함
 - 기금운용 초기에는 어업경영자금 용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안기금의 이관을 계기로 예산지원 방향을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과 수산물가공업의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어업기자재 생산 촉진, 원양 어업 육성 등으로 구분됨
 -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용자사업으로 구분됨
- 수산발전기금은 1999년 ‘어업인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한 뒤 200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운용되기 시작하였음
 - 1999년 9월 7일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 마련
 - 2001년 7월 31일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 개시)
 - 2003년 1월 1일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개시
 - 2005년 1월 1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
 - 2006년 1월 1일 :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개시
 - 2007년 8월 3일 :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 개시
 - 2008년 8월 1일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징수 개시
 - 2009년 4월 22일 :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수산발전기금 근거법 편입

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1)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 수산업법 제79조는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를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총 14개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타 기금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관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지원형태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해양환경보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경영지원,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환경보전분야에는 폐기물 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있음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분야에는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됨
 - 수산경영 지원 분야에는 양식어업지원, 노후 원양어선 대체,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사업이 포함됨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분야에는 수산물수매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사업이 포함됨
- 해양기금수입원(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인 해양환경보전사업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경상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성격에 따른 회계 재조정되었음
 - 다기능 청소선 운영 지원, 수산동물 질병관리,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중단 및 농특회계로 이관되었음

- 노후 원양어선 대체사업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대체를 통한 선박안전성 확보 및 장비 현대화로 원양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 도모를 위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였음

2) 재원 조성

- 수산발전기금은 2020년 말 현재 누적 8,27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 수산발전기금이 설립될 당시 120억 원 규모였으나 68배가 늘었고 매년 신규재원이 포함되면서 자체수입이 연평균 약 50%씩 증가함
 - 신규재원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0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05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시('06년), 수산물공매납입금('0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08년)등 임
 - 향후 중장기적으로 신규재원 발굴 등을 통해 조성규모를 2016년에 1조 5천억 원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조성목표를 1조 원으로 수정하였음
- 2010년 기준으로 총 조달규모 5,756억 중 91%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정부출연금인 1%, 여유자금회수가 8.1%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 중 융자원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 재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국토해양부 소관 수입재원으로 이 222억 1,000만원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순수 자체수입 재원은 비축사업, 수산물판매대금과 수산물공매납입금 221억 9,200만원임
 - 한편 여유자금의 '05~'09년 5개년 평균 수익률은 4.61%로 8개의 타기금 평균수익률 4.46%보다 0.15% 포인트 상회함

3) 운용 현황

- 2010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5,756억 원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고, 사업비도 4,995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액 편성되었음

- 경상지출 404억 원('09년 대비 41.3% 감소), 용자지출 4,591억 원('09년 대비 100% 감소), 여유자금운용 749억 원('09년 대비 60.0% 증가)으로 편성되었음
- 경상사업과 용자사업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2010년 전체 운용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운용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수산발전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2010년)]

단위 : 억 원

조 달		운 용	
계	5,756	계	5,756
○ 자체수입	5,233	○ 사업비	4,995
○ 정부내부수입(출연금)	55	○ 기금관리비	4
○ 차입금		○ 사업운영비	8
○ 여유자금회수	468	○ 정부내부지출	-
		○ 여유자금운용	749

(1) 경상사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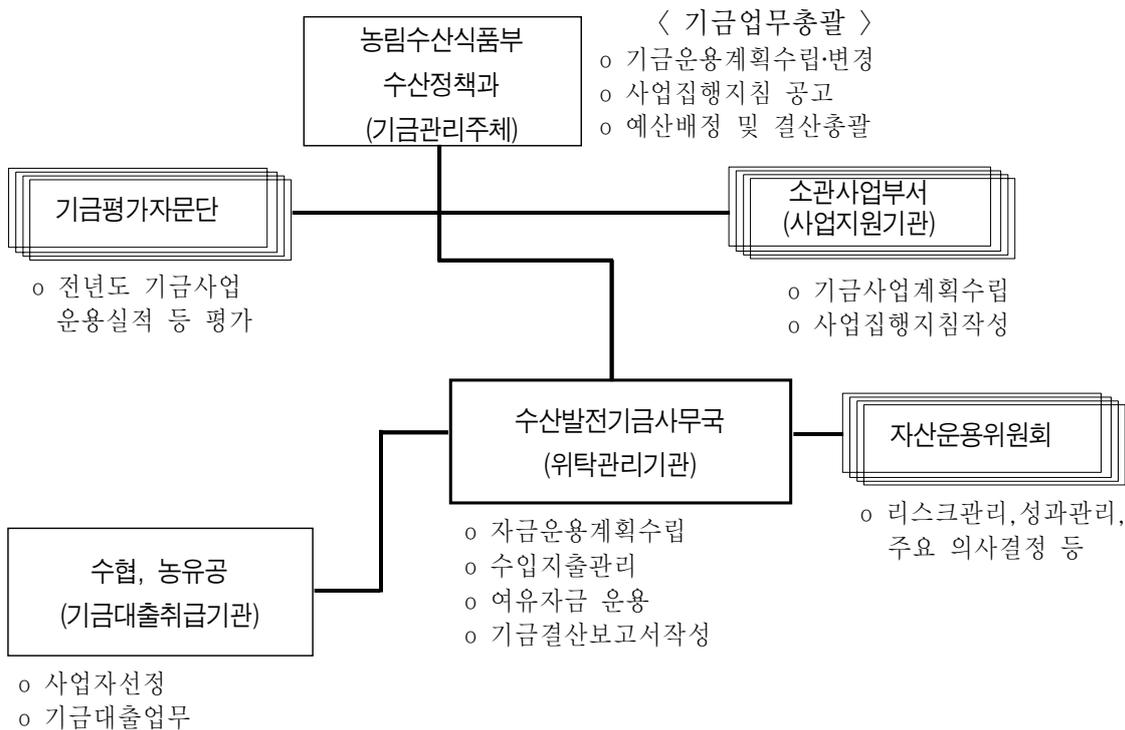
- 2010년 경상사업 총 지원비는 500억 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이 경상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26.0%)을 차지하고 비축사업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각각 21.6%, 21.2%를 차지함
- 한편 2010년 기준 경상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은 80.6%를 기록함
 - 경상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축사업의 경우 소진율이 2009년 96%에서 2010년에서 10% 포인트 감소한 86%를 기록함
- 총 사업지원금액에서 약 26%를 차지하는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에 총 130억이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15억이 지원되어 되었음

(2) 용자사업 부문

- 2010년 기준 용자사업은 약 4,637억이며 전체 용자사업의 31.8%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사업은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대출금리 3~4%, 1년 상환임

- 기금의 용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상환이 대부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 등 장기상환을 지원조건으로 함
- 금리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3~4% 수준을 지원조건으로 함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주체 및 사업체계]

3.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 1항에 근거하여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됨
- 기금운용평가는 매년 우리나라 기금중 1/3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금존치평가 매 3년마다 모든 기금에 대하여 평가함

1) 기금사업 운용 평가

-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사업운용부분)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금의 평균 점수는 60.6점으로 전년 (64.3)보다 하락하였음
- 수산발전기금의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보통, 2개 사업은 미흡, 1개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
 - 경제 분야 기금 13개 중 12위이며, 미흡한 사업은 어업경영자금지원, 유통·가공시설지원이며, 매우 미흡은 수산물유통자금지원임

[경제 분야 13개 기금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단위 : 개

기 금 명	사업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	0	0	7	1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0	0	1	0	0
수산발전기금	6	0	0	3	2	1
축산발전기금	6	0	0	2	3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	0	1	2	2	0
농지관리기금	2	0	0	2	0	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	0	0	1	0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	0	0	2	1	0
대외경제협력기금	2	0	0	2	0	0
전력산업기반기금	6	0	1	3	2	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	0	0	2	0	0
수출보험기금	1	0	0	1	0	0
국민주택기금	2	0	0	2	0	0
합계	45	0	2	30	11	2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 사업운영부분 -, 2010. 5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별 운용 평가 결과]

구 분		2009년 예산 (억 원)	사업유형	점 수	등급
수산물가격안정	민간보조	162	민간보조	63.5	보통
	융자	2,718	융자	61.5	보통
어업경영자금지원		339	융자	58.5	미흡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67	융자	64.7	보통
유통·가공시설지원		306	융자	58.5	미흡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475	융자	48.5	매우미흡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사업운영부문 -, 2010. 5

- 평가가 낮은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임
 - 목표치 설정, 평가자료 인정 문제 등 평가 자료상의 문제
 - 예산 절감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결과로 '0'점 처리
 - 모니터링체제의 미흡함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사업 운용평가는 적절한 '목표치'와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음

2) 기금사업 존치 평가

- 2010년 평가에 따르면 수산발전기금은 '존치'로 평가되었음
 - 정부부처의 예산사업과 중첩되는 일부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업운영 효율화 권고를 받았음
- 권고사항은 다음의 네 가지임
 - ① 기금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 필요
 - ② 해양환경개선사업은 일몰시기 혹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시기를 설정
 - ③ TAC 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도 구조조정 완료시기 설정
 - ④ 기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구 분	기금사업 관련지표	목표치		개선 필요성
	지표 내용	설치 당시	2009년 현재	
정량적 평가	수산물 계통출하율	52,3	51,4%	지표의 개선
	어업인후계자	14,147	18,246	부적합한 지표
	TAC 참여 어업인(척)	272	1,460	최종 목표치 부족
	양식생산량	656천 톤	1,353천톤	부적합한 지표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로 어획량 증가 -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조성 - 수산물유통의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 -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획량 증가 			정량적 지표로 개선 필요

자료 : 기획재정부, 기금준치 평가보고서, 2010. 6

제5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 방안

1.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 사업체제 개편의 목적은 기금 특성을 활성화, 기금정책 및 국내외적인 여건에 부응하여 수산발전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함
 - 기금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 유지
 - 기금준치평가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수산보조금의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사업의 조정

2) 사업체제 개편 방향

-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 방향은 크게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로 요약됨
 -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신규사업 발굴

2. 사업체제 개선 방안

1) 자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자원의 확보가 요구됨
- 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으며 안정적 자원의 확보
 - 수산물 관세수입금
 -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후생 증대, 그리고 가격

조정을 통한 생산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라는 측면에서 수산물 관세수입금과 같은 수입이익금을 신규 재원으로 편입

- 기금사업 중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비축사업 및 출하 조절사업,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과도 높은 연계성 보유

- 레저용 낚시이용자 부담금 신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사업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적절성 확보

-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재원 편입

- 한-미, 한-EU FTA 등 신규 협정의 발효로 수정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의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재원의 수산발전기금 편입 추진
- 관련법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지원과 관련해 수산부문은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함

○ 여유자금의 수익률 제고

- 수발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이 기금재원의 확충에 보다 적절히 이용될 수 있게 목표 수익률의 향상을 위한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2)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 기금으로서 독자성 확보와 사업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소액 분산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 사업 운영 및 지원 효율성의 저해 요인이 되는 만큼 농안기금, 축발기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자금제도’의 도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수발기금 사업 중에서도 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도입으로 자금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증대, 중복지원의 방지 도모

[수산발전기금의 사업통합(예시)]

대상사업	통합 사업
우수경영체 종합지원	우수수산물지원 + 가공시설 현대화 + 가공업체 운영자금
유통사업 종합지원	산지 유통개선 + 소비지 유통개선

3)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 기금준치평가에서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된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정량지표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이며,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는 정량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안(예시)]

구 분	기금준치평가 결과(2010년 5월)		개선 방안(예시)
	기금사업 관련지표	평가 결과	
정량적 평가	수산물 계통출하율	지표 개선	· 위판장·도매시장 거래(처리) 물량 · 거래규모(금액/물량) 증가율 등
	양식생산량	부적합 지표	· 지원업체의 양식생산량 증가율 · 지원업체의 단위당 생산성 증가율 등
정성적 평가	- TAC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로 어획량 증가	정량지표로 개선 필요	· 지원업체의 개소수, 양식면적 등 · 대상품목의 가격변동율, 고객만족도 등 · 해양폐기물 수거율(계획 대비) 등
	-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조성		
	- 수산물유통의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		
	-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획량 증가		

3.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은 두 가지
 - 기금준치평가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사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사업집행의 유연성 및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자금제도 도입

1)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수산발전기금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은 다음과 같음

[수산발전기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구 분		2011년	기금준치 평가 보고서	조정방안			
경상 사업	수산경영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	예산사업 전환	유지(FTA사업)		
		- 폐업지원금	=		유지(FTA사업)		
		- 생계소득 및 안정	이관		농특회계 이관		
		- (신규)어업인 영여자금 공급	신규		신규 유지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연근해어장 환경 개선	감소		예산사업 전환		
		- 비축사업	증가		규모 확대		
		- 수산물 자조금 지원(출하조절)	=	관측 예산사업전환 자조금 지원 확대	관측예산 출연금전환 자조금 지원 확대		
	해양환경 보전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유지	유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보조)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				
용자 사업	수산경영 지원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감소	유지 혹은 예산사업 의 품목 경쟁력 제 고사업으로 전환	유지		
		- 양식어업 지원	감소				
		-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증가			예산사업 전환	유지(FTA사업)
		-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				
		-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			유지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수산물 수매 지원	감소		수매지원 축소 민간비축 신설		
		- 우수수산물 지원	=		지원방법 전환 -선택과 집중방식-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감소		확대		
		-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감소		유지		
		-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감소	기금사업 여부 검토	유지		

(1) 예산사업 전환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전액 보조사업이므로 소모성 지원이며, 국가의 책무이므로 예산사업이 타당함
- 수산업관측사업
 - 전액 보조사업이므로 소모성 지원이며,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예산 보조사업으로 전화하거나 정부출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2) 사업 내용의 조정

- 비축사업
 -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축규모를 확대하되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자조금 지원
 - 사업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지원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금 내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구매 지원
 -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하는 방식보다 소수의 민간단체에 집중시켜 구매와 방출 규모를 확대, 신속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축사업 규모가 한정되므로 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보조금 금지사업으로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
- 기타 용자사업
 - 우수수산물 지원은 정부 정책기조인 세계화 및 6차산업화에 맞는 수출업체에 지원을 확대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은 금리가 3~4%로 금리 부담은 생산자 수취가격에 반영되므로 지원조건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은 수산보조금 금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이 필요함

(3) 사업 금리 조정

- 수산정책자금금리는 2~4%로 평균 3%,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1~4%로 평균 2~3%대이며, 평가에 따른 무이자 인센티브도 도입
- 사업 금리 조정방안은 다음의 기준
 -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 중 시설자금이 아닌 경우와 생산자에게 비용 전가 정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1~2% 수준
 - 생산자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지원, 가공 및 유통 지원 중 생산자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없는 경우는 현행체제 유지

(4)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

- 금지보조금으로 포함되는 사업 중 비축사업, 수매지원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등은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으로 전환하여 유지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등은 ‘수산업 구조개선사업’ 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활용

2)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 수산발전기금의 자금성격과 사업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금화 지원 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수산발전기금의 종합자금제도 도입(안)]

기존 사업			종합자금제도		
			명칭	사업 Pod	집행방식
경상 사업	수산경영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수산물 물가안정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수산물 수매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신청자가 취사·선택하 여 사업구상
		- 폐업지원금			
		- (신규)어업인 영여자금 공급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연근해어장 환경 개선			
		- 비축사업			
		- 수산물 자조금 지원(출하조절)			
	해양환경 보전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보조)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용자 사업	수산경영 지원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수산업 구조개선	수산경영 지원사업 해양환경 보전사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사업신청자가 취사·선택하 여 사업구상
		- 양식어업 지원			
		-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수산물 수매 지원			
		- 우수수산물 지원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4. 신규사업 발굴

1) 기본원칙 및 개요

- 신규사업 발굴 원칙
 - 수산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용도에 적합한 사업 발굴
 - 기금재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 WTO 금지 수산보조금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발굴
 - 미래 수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기금존치 평가에서 지적한 사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 기금의 존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상사업의 가능한 한 배제
- 신규사업 발굴 개요
 - 신규사업 발굴 원칙을 기준으로 9개 분야에 대한 총 16개 사업 도출
 - 향후 총 32개로 사업(경상사업 9개, 경상/용자사업 1개, 용자사업 22개)으로 확대

[수산물발전기금 발굴 신규사업 개요]

구 분	기존사업(2011)		신규사업	
	사업명	지원형태	사업명	비고
1. 어업 구조조정 촉진	1.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2.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 용자 - 용자	1. 어선리스사업 2. 수산장비 임대사업	- 신규 - 농특
2. 기르는어업 육성	3. 양식어업 지원	- 용자	3.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4. 신품종 개발 및 종묘생산	- 신규 - 신규
3.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4. 어업인 영어자금 공급	- 용자		
4. 수산물유통 구조 개선	5. 우수수산물 지원 6.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 용자 - 용자	5. 산지 위판장 현대화 6.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7.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 신규 - 광특 - 광특
5. 수산물 생산 및 출하 조절	7. 수산물 구매 8. 비축사업 9. 수산물자조금	- 용자 - 경상 - 경상	8.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 통합 및 신규
6. 수산물 보관·관리			9. 수산물 물류사업	- 신규
7. 해양환경개선	10. 연근해어장 환경개선	- 경상		
8. 해양심층수 연구 개발			10.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 신규
9. 새로운 어장 개발	11. 해외수산물시설투자	- 용자	11.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12.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13. 글로벌수산물기업 육성	- 신규 - 신규 - 농특
10.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12. 가공시설 및 운영	- 용자	14. 전통 수산물가공업 15. 세계 수산식품 개발	- 신규 - 신규
11. FTA 발효 어업인 지원	13.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14. 원양어업관리회사 15. 폐업지원금 16. 소득보전직불금	- 용자 - 용자 - 경상 - 경상	16. FPC 건립사업	- 신규
12.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17.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18. 해양폐기물 정화(민간 보조) 19. 해양폐기물 정화(지자체 보조)	- 경상 - 경상 - 경상		
합 계	19개 (경상 8개, 용자 11개)		16개 (경상 2개, 경상/용자 1개, 용자 13개)	

주 : 기존의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은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

[수산발전기금 사업개편(안)]

기금용도	사업명	지원형태	계속성	추진기간
어업구조조정 촉진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용자	계속	단기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용자	계속	단기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용자	계속	단기
	어선리스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장비 임대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기르는 어업 육성	양식어업 지원	용자	계속	단기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용자	신규	중장기
	신품종 개발 및 종묘생산	용자	신규	중장기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어업인 영어자금 공급	용자	계속	단기
수산물유통 구조개선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용자	계속	단기
	산지 위판장 현대화	용자	신규	단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경상/용자	신규	중장기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	수산물자조금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용자	통합 및 신규	단기
해양환경 개선	연근해어장 환경개선	경상	계속	단기
새로운 어장개발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	계속	단기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글로벌수산기업 육성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가공업 육성	가공시설 및 운영	용자	계속	단기
	전통 수산물가공업	용자	신규	중장기
	세계 수산식품 개발	용자	신규	중장기
FTA 발효 어업인 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용자	계속	단기
	폐업지원금	경상	계속	단기
	소득보전직불금	경상	계속	단기
	FPC 건립사업	경상	신규	단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민간보조)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 보조)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보관·관리	수산물 물류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해양심층수 연구 개발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경상	신규	중장기
합 계		총 32개(경상 9, 경상/용자 1, 용자 22) (단기 19, 중장기 13)		

2) 단기 신규사업

(1)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산물 구매자금의 일부 지원으로 물가안정 대상 수산물의 수급 조정 물량 확보

[정부 비축 및 민간구매비축(안)과의 차이점]

비 고	정부비축	민간구매비축(안)
자금지원	정부자금	용자+자담
사업시행	정부	민간사업자
구매품목	정부 지정(고등어, 오징어, 명태)	정부 지정 및 사업자 결정
손실부담	정부	민간사업자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구매비축의 보완사업으로서 정부 물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방출지시에 따라 방출
 - 구매품목
 - 의무비축 품목 및 물량 : 정부 결정(사업규모의 50% 수준)
 - 기타 구매물량 : 민간사업자 결정
 - 지원규모 및 조건 : 매년 1,000억 원, 무이자(사업자 손실 부담), 용자 80%, 자부담 20%

(2) FPC 건립사업

- 대형 위판장을 복합기능을 가진 수산물산지유통센터(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FPC)로 개선하여 중소형 위판장과 소비자 구매처를 연결하여 유통허브 역할 수행

[FPC의 선정 요건]

구 분	조건
취급규모	연간 8만 톤 이상의 취급규모를 가질 것
소비지 인접성	산지이면서 주요권역, 대도시에 인접할 것
산지 접근성	권역내 산지 위판장과 물류접근성이 좋을 것
부지/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취급이 가능한 부지 보유 냉동창고 등 관련시설이 있거나 설치 가능할 것
배후지 활용도	시장 주변에 가공업체 등이 입지할 배후지가 충분할 것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중대규모 위판장 10개를 선정하여 2012~2016년까지 건립
 - 개소당 500억 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5,000억 원 지원

(3) 산지 위판장 현대화

- 사업의 목적
 - 수산물의 양륙 이후의 품질·위생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위판장에 대해 적절한 품질·위생관리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해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
 - 산지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상품화 수준제고
 - 1단계 : 최소비용으로 가능한 시설 기준으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2단계 : 이용도가 높은 시설 및 노후화 정도가 심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위생 및 품질, 온도관리시설, 전처리시설을 보급
 - 3단계 : 산지시장의 위생품질관리수준을 등급화하여 인증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동서남해의 3개 해역에 6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 시범사업 이후 2020년까지 170개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
 - 개소당 20~50억 원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300억 원 지원

3) 중장기 신규사업

○ 총 13개의 중장기 신규사업 제안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신규사업 개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어선리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어선의 리스를 통해 어업 구조조정 및 조업 합리화에 의한 어업인 경쟁력 제고 ○ 어업분야 진입에 대한 초기투자금 부담 감소를 통한 어업후계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어선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어선 건조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수산장비 임대사업(농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비 임대를 통한 양식어업인의 부담 경감 ○ 취약지역에 대한 어업용기자재 무상 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수산 기자재 임대비 지원 - 지원대상 : 어업인(양식포함), 지자체 등 - 지원형태 : 보조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어장환경에 걸맞는 인공어초의 개발·제작으로 자원조성사업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인공어초 개발제작비 지원 - 지원대상 : 인공어초 제작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신품종 개발 및 종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신규 양식 품종의 개발 및 우수 종묘 생산으로 양식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신품종 및 우수종묘생산 업체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종묘생산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광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유통시설(위판장 등) 지원 - 지원대상 : 수협, 기업 및 경영체, 지자체 등 - 지원형태 : 융자
친환경일류수산물 공급센터(광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수산물 전문 공급센터를 운영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물류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물류업체 - 지원형태 : 융자
글로벌수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산업의 세계화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글로벌기업인수 합병 지원 - 지원대상 : 글로벌수산업체 - 지원형태 : 융자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해외 어장 개발·확보로 수산물 수급의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어장개발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원양어업체 - 지원형태 : 융자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양식어장 개발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어장개발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식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전통 수산물 가공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수산물가공품의 상품성 강화로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어가 소득 증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유통·가공업자(체) - 지원형태 : 융자
세계 수산식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소비자의 수요에 걸맞는 새로운 수산식품기술 개발·생산으로 국내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식품 개발 및 제조 관련 시설/운영비, 컨설팅비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수산물 물류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와 소비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유통 효율성 증대 ○ 현대화된 물류시설/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개선으로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수산물류 시설/장비, 물류운영 시스템 도입·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유통·가공업자(체) - 지원형태 : 융자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과의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해양심층수 관련 R&D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 - 지원형태 : 경상

제6장 결론

- 수산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수산부분 유일의 기금으로서 경직성 예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신속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사업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내외적으로 기금의 존치의 적합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수산보조금 금지라는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업체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그동안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의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존치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일부 사업의 중복성 및 구조조정 등 통폐합이 지적되었고, 일부 사업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저해되는 사업도 존재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설정함
 - 기금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을 살리도록 함
 - 기금존치평가에 부합하도록 사업체제를 개편함
 - 수산보조금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하도록 사업체제를 개편함
 -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사업을 조정함
- 주요 사업체제 개편안으로는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임
 - 현행 사업체제 개선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분석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함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은 기금존치 평가서를 토대로 분석하여 개편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수립함
 - 신규사업 발굴은 예산사업 분석, 타 국내외 기금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체제 개편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폐지되어 예산사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주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수산보조금 금지논의 동향과 연계한 폐지사업의 경우는 WTO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연계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사업체제 개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달리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률로써 설치된 특정한 자금을 말함
 - 우리나라 기금수는 1999년 75에서 지속적인 기금폐지 및 통폐합을 통하여 2010년 현재 총 63개로 축소되었으나 기금운용규모는 476.8조원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금정책은 2003년 기금관리법 제정과 기금준치평가를 실시하면서 점차 기금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 및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수산부문의 유일한 기금임
 - 동 기금은 1999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어업인지원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마련
 - 2001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되면서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사무국을 두고 운용중임
 - 2009년 법령개정에 따라 동 기금 설치근거법이 수산업법으로 변경됨
- 그동안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가운데, 수산발전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성·운용되는 특정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동 기금 설립당시 120억원이던 기금의 규모는 2010년 현재 8,279억원으로 약 68배가 증가하였고, 사업수 또한 5개에서 2010년 현재 20여개 사업으로 확대됨

- 그러나 2010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수산발전기금은 추진하는 사업이 광범위하여 기금사업으로서의 특화성이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권고되었음
 - 수산발전기금의 존치평가에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그 동안 수산발전기금은 국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의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사업의 중복성·유사성·광범위성, 사업추진 적절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음
- 또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산발전기금에 특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향후 기금사업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특히 WTO/DDA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 사업의 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에 있어 이 같은 세계적 논의 동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산발전기금이 우리나라 수산정책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수산발전기금사업의 체제 개편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 환경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과 아울러 현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를 분석하였음. 이를 기초로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 방안으로서 사업체제 개선방안, 구조조정 및 통폐합방안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제시하였음

1. 기금정책의 변화

1) 기금의 정의 및 기능

(1) 정의

- 국가재정법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음(동법 제5조제2항)
- 미국 정부회계위원회(NCGA)
 - 특별한 규정·제한·한도에 따라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되고 독립된 제정회계의 실체를 이루는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총계
- 일반론
 -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외로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자금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고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특히 일반적인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설치

(2) 기금의 기능

○ 경기조정 기능

- 국민경제의 활동에 대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기 국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필요 있을 때 재정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활동수준에 유효 적절한 조치를 강구
- 한국은 경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그 정책의 일환인 기금 역시 공공성과 자율성·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제도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는 다르게 재정정책에 적극적으로 경기조정기능을 수행

○ 자원배분 기능

-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배분이 바람직하나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
- 기금에 의한 자원배분의 기능을 보면 농수산, 중소기업건설 등 사업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원을 제공해 주며, 또는 보훈사업, 환경오염방지, 산재예방 등 사회복지분야에 자원을 공급해주어 예산에서 자원배분이 미치지 못한 사회정책분야를 개발·육성하는 것이 자원배분기능에 해당

○ 금융적 기능

- 기금은 민간금융에 대해서 양적·질적으로 보완하는 재정기능으로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기금의 금융적 기능으로써 물적 보완은 민간 부문에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공급해 줌으로써 민간자금을 양적으로 확대·보완하여 충족
-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통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질적 보완 기능

○ 기금의 긍정적 측면

- 외부경제효과가 높거나 국민경제의 전략부문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
- 둘째,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양적 확대·보완기능을 수행

- 사업량이 가변적인 재정사업을 기금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의한 일반회계 규모 확대를 억제

○ 기금의 부정적 측면

- 재원부족시 파산 가능
- 재정팽창 우려

(3) 기금의 분류 및 재원

○ 기금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관리 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
- 민간관리 기금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법인이 관리주체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 사업 및 관리기금(정책사업 기금) :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금이므로 정책사업 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예산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기금
- 계정성 기금(용자 기금) : 주요 사업에 대한 용자를 담당하는 기금으로서 일단 조성되면 사용해버리지 않고 용자 등의 형태로 일단 기금에서 지출되더라도 용자금의 회수 등의 방법으로 다시 기금으로 회수되는 기금으로 통합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연금성 기금(보험사업성 기금) : 보험 사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유사시의 소요를 위하여 적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연금성기금은 여유자금이 많을 수 있으므로 그 여유자금을 재정투자특별회계에 예탁하는 경우가 있음

○ 운용방식에 의한 분류

- 소비성 기금 :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기금으로서 예산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기금으로 이 기금은 예산의 지출구조가 경직된 데 대하여 현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외로 운용된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
- 회전 기금 : 소비성 기금과는 달리 일단 기금이 조성되면 사용해버리지 않고 용자 등의 형태로 기금이 지출되더라도 용자금의 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기금으로 회수되는 기금

- 준비성 기금 : 융자성 기금이 대표적인데 우선 기금에서 지출하고 차기 연도 본예산이나 당해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의결된 자금 또는 기타 외부자금으로 보전

2)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 설립목적 및 활용도

-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민주통제의 수단
-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융통성과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위법성과 공공성 결여를 방지
- 기금은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사회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정부 관리 기금의 경우 재정활동으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우리나라 기금제도 변천

- 1961년 12월 :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한 예산회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
- 2003년 12월 : 기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및 기금준치 평가제도가 도입
- 2006년 10월 :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기금관련 사항은 동법으로 통합되어 관리

○ 연대별 우리나라 설치 기금 현황

- 1960년대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출보험, 외국환평형, 애국지사사업조달, 과학교육, 원조회전
- 1970년대 : 양곡관리, 종자, 재형저축권장, 직업훈련촉진, 농업산학협동, 농수산물가격안정, 석탄, 관광진흥개발, 산림개발, 국민투자, 방위산업육성, 농업기계화촉진, 해운진흥, 농어촌후계자육성
- 1980년대 : 사회복지사업, 진폐, 농어촌목돈마련저축장려, 식품진흥, 중소기업창업지원, 국민주택, 기계공업진흥, 보훈, 수산진흥, 전자공업진흥, 공업발전, 농어촌지역개발, 대외경제협력, 석탄산업육성 산업재해보

- 상보험, 체신보험, 국민연금
- 1990년대 : 기금 수 증가 및 규모도 방대하여 기금운용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정부는 1994년부터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관리 기금의 수는 1995년 이후 축소하여 2002년 58개로 축소됨
 - 2000년대 : 다시 기금수가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3개로 순수기금 52개, 금융성 기금 1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2-1〉 우리나라 기금 현황

단위 : 개

연 도	1961년	1980년	1990년	1993년	1999년	2002년	2003년	2010년
기금수	3	45	98	114	75	58	60	63

주 : 2002년까지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합한 수치임.
 2010년 기금 중 금융성기금은 11개이고 순수기금은 52개임.
 자료 : 배득중,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3.p.360.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현황, 2010. 6.

3) 기금의 성격 및 운용

(1) 기금의 성격

- 기금은 광범위하게는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연계되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사전의결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금은 정부예산회계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되어 설립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의 예외사항으로 사전의결의 원칙과 상이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중성을 가짐
- 일부 기금의 경우 조세에 준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으로 재원의 일부를 조성하며 종합재정수지 및 정부 내 통화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비슷함
- 예산과 기금 비교
 - 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 목적과 결부시키는 목적구속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금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

- 예산은 기획재정부 일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량권과 탄력성이 보장

(2) 기금의 재원

- 기금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 임의출연금, 부담금, 외부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표 2-2〉 기금과 예산의 비교

구 분	기 금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 설치 사유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2.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 원으로 용자사업 등 사업 수행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 일반회계 외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3.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조정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좌 동
4. 집행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 좌 동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변경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비금융성기금 20%) 이상 변경 시 국회의결 필요	· 추경예산편성	· 좌 동
7. 결 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 동	· 좌 동

자료 : (구)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2003년도 기금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12., p.84.6.

○ 정부출연

- 정부출연 근거는 개별 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 지불 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 시 제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일단 정부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전반적으로 주무부처 또는 관의 책임 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당국에서는 정부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다시 출연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판단
- 민간 임의출연금
 - 관련법에 민간 임의출연금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
 - 출연의 형태는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 기부금이 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
- 부담금
 - 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한 경우와 불특정한 경우로 구분
 - 특정 부담금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불특정부담금은 부가모금, 과징금 등임
 - 강제부담금의 예로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모금,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 등
 - 부담금은 민간 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 등과 함께 자체자금으로 분류되고 집행과정의 성격에 따라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며 기금조성단계에서 원천적인 부조리로 비판을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판과 주목의 대상임
- 외부차입
 -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외부차입에는 크게 채권발행, 장·단기 차입금, 차관 등이 있는데, 공공자금의 채권발행은 기금운용주체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여,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 채권의 소화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채권단, 보험단에 의한 인수, 일반매출 또는 첨가소화(국민주택채권)방법이 있음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에는 여유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

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이 있음

- 여유자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수입이 있음

○ 기타세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전입이나 기타 잡수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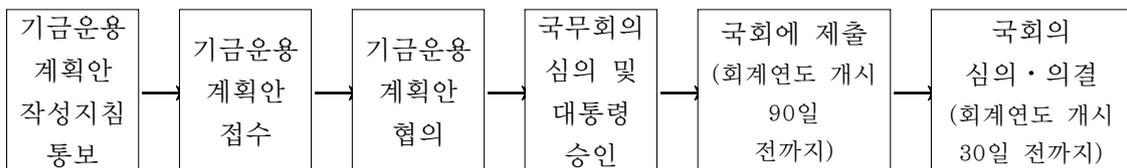
(3) 기금의 운용

○ 기금 운용관리주체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금운용관리계획은 기금관리주체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처별 예산안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국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는 국회법에 의거 심의·의결



〈그림 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기금 수는 63개로 기금운영규모는 총 476.8조원에 달함

〈표 2-3〉 기금 운용규모의 추이

단위 : 조 원

구 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금운용규모 (개수)	82 (75)	197 (75)	220 (61)	191.2 (58)	236.9 (60)	463.8 (60)	543.1 (62)	476.8 (63)
기금 (개수)	51 (37)	119 (37)	136 (43)	144.8 (48)	191.0 (49)	428.5 (50)	510.5 (51)	510.5 (52)
금융성 기금 (개수)	31 (38)	78 (38)	84 (18)	46.4 (10)	45.8 (11)	35.3 (10)	32.6 (11)	32.6 (11)

자료 : 기획재정부, 전제자료집

4) 기금정책의 변화

(1) 국가재정정책의 변화

-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요구 증대
 -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초 정착, 성장과 분배를 조화한 자원배분, 성과관리 중심 등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강화
 -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기금준치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금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강화
 - 기금의 통폐합 논의 강화되어 2000년대 많은 기금 통폐합 추진
- 성과예산관리제도 도입
 - 1999년 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 부처에 성과관리제도 도입

(2) 기금정책의 변화

- 2000년대 기금 관리 강화
 - 2000년 국회예결회 상설화
 -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구분 폐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및 기금준치 평가제도가 도입
-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으로 예산과 기금 통합 관리

5) 기금의 문제점

(1) 기금설치상의 문제

- 기금의 지나친 수적·양적 팽창
 - 통합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게 증가함으로써, 재정체계가 복잡 다기화 되어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기금주체의 자의적 운용 소지가 커져 재정운영의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
- 일반·특별회계와 중복 및 연계성 미흡
 -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제도와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써 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예산회계의 중복화 또는 특별회계의 이중구조화를 초래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
- 유사기금의 중복 설치
 -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존치 실효성이 미약한 기금들이 폐지되지 않은 채 존치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별 모호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형식적인 분류에도 불구하고 출연방법이나 성격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 통합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
 -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적자요인에 의하여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면치 못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

(2) 기금운용상의 문제

- 종합적인 협의체제의 미흡
 - 개별기금의 운영계획들이 관계부처들과의 사전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대부분 주무부서 단독으로 결정되는 등 기금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협의메커니즘이 결여

- 정부출연기금의 경우 개별 기금법상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미확보
-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문제
 - 기금관리주체들이 기금을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기금운용의 효과를 제고 시키기보다는 투자수익율이 낮은 복리후생사업이나 핵심사업과 관련이 적은 주변사업까지도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적 기금운용
- 기금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체제의 미흡
 -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었더라도 그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위원구성의 대표성이 부족
 - 자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와 자금 관리모델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
- 기금운영의 자의성
 - 일부 기금의 경우 상위부처인 중앙관서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전문적 재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관련기금이 관련 상위부처의 쌈짓돈 역할

(3) 기금통제장치의 미비로 인한 문제

- 기금운용에 대한 법적 규정의 미비
 - 기금관리주체의 운용근거가 자율성에 대한 법적 보장이 결여
 -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 부족
- 국회차원에서의 통제장치 미흡
 - 기금 운용규모가 일반회계를 능가할 정도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나 통제권을 부정
 -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낭비가 지적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초래

6) 기금의 개선 방향

(1) 기금의 정비

- 유사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추진

- 기금간 명칭 및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금이 특별 회계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통·폐합하거나 단순화시켜 통합 관리
- 일부기금의 공공기금화 방안 강구
 - 임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금분류를 지양하고 기금의 성격, 자원 조성 방법, 기금운용의 효과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평가
 - 따라 공공기금은 정부의 공공자금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타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탄력적·자율적인 운용을 보장
- 기금신설의 억제방안 강구
 - 정부의 기금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신설된 기금이 적지 않은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금설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2) 기금운용체제의 개선

- 공공자금 관리의 통합 관리
 - 공공관리기금에 위탁된 여유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별기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위탁기금의 확대, 위탁금리의 실세화 및 규모산정의 적정화
- 통합적 협의체제 설치 필요
 -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전체 재정운용의 구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제 구축
- 기금조성방법의 개선
 - 공공기금은 민간 강제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응의원칙에 의거하도록 하고, 기타기금의 재원은 민간출연에 의하여 조성되도록 유도
 - 기금의 자원 조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규모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설정을 모색
 - 강제부담금이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될 경우 그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도의 도입 검토
- 국회의 기금통제 강화
 -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승인 권한 부여

2.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1)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 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하였으며, 주요 의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 9개 분야임
 -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피쉬프렌즈 그룹(FFG, Fish Friends Group)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됨¹⁾
 - FFG는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등 11개국임
-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2007년 11월 규범의장은 수산보조금 협정 의장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함
 - 이에 대해 FFG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개도국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개도국 특별대우를 확대 요구하였고, 우리나라 등 공조국은 의장안의 포괄적 금지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음
- 2008년 12월 규범의장이 주요쟁점에 대한 질문서(로드맵)를 제시함
 - 반덤핑, 일반보조금 분야는 의장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산보조금 분야는 의견차가 커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구하는 로드맵에 기초하여 1년간 논의하였으나 회원국의 기존 입장 반복으로 결론 없이 종료됨
- 2010년도에는 텍스트에 기초한 협상이 진행됨
 - 브라질 등 4개국과 미국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의장안의 텍스트를 수정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1) FAO는 전세계 수산자원의 80%가 완전개발 또는 남획상태라고 발표하였음

- 또한 대사급 소그룹회의를 구성(우리나라 포함 17개국)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점검함
-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WTO 라미 사무총장이 2011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 분야별 협상 가속화를 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
 - 수산보조금 협상도 Lamy 사무총장이 금년 3월까지 새로운 협정 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전체회의, 소그룹회의, 대사급 소그룹 회의, 양자협의 등 다양한 협의 절차(Cocktail Approach)에 따라 합의점을 모색 중임

2)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 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제외됨
- 의장 안에 따르면 금지보조금의 범위는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⑥소득 보전 ⑦입어료 ⑧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임
 - 이 같은 의장 안에 대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 국가는 의장안을 지지하는 강경입장이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 대폭 축소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의장 텍스트가 기초하고 있는 금지-예외의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가능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2009년 11월과 2010년 9월에 제출하였음
 - 한편 일본은 유류보조금을 금지로 분류하는 제안서를 2011년 1월에 제출하였음

〈표 2-4〉 WTO/DDA 의장 안, 우리나라 및 일본 제안서 비교

분 류	의장 안('07. 11)	우리나라 제안서('10. 9)	일본 제안서('11. 1)
금 지 보조금	① 선박 간·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운영비(허가 수수료, 연료, 얼음, 미끼, 인적비용, 보험, 사회부담금, 어구, 해상지원, 어획물 양륙비, 처리비, 어획물 가공활동) ④ 항구 기반시설 ⑤ 소득 보조 ⑥ 가격지지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⑨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	① 선박 간·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⑨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	① 선박 간·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운영비(연료, 얼음, 미끼, 어구) ④ <삭제> ⑤ <삭제> ⑥ 가격지지 (단, 식량안보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인정) ⑦ 입어료 지원 (단, 개도국 EEZ내 입어료 지원은 예외) ⑧ 협정이 IUU 어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삭제>
조치 가능 보조금	-	③ 운영비 ④ 항구 기반시설 ⑤ 소득 보조 ⑥ 가격 지지	-
일반 예외	※ 어업관리조건 <선박 간·개조 금지 예외>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신조나 구입 아님 - 어획능력 증가 없음 - 안전표준에 부응을 위함 ○ 어획능력 증가 금지 조건 - 선택적 어구의 사용 - 환경적 영향 경감 - 어업관리제도 이행	※ 어업관리조건 <선박 간·개조 금지 예외>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신조나 구입 아님 - 어획능력 증가 없음 - 안전표준에 부응을 위함 ○ 어획능력 증가 금지 조건 - 선택적 어구의 사용 - 환경적 영향 경감 - 어업관리제도 이행	※ 어업관리 및 일반규정 조건 <선박 간·개조 금지 예외> ○ 어선 건조, 매입의 예외 - 어업별 50% 이하로 톤수를 줄이는 경우 어선대체 - 기존 어선의 폐기 ○ 어선 수리, 개조, 현대화의 예외 - 어획능력 증가가 없음 · 선원을 위한 선박 안전 및 숙소개선 목적 · 어업관리에 필요한 조치 ·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표 2-4〉 WTO/DDA 의장 안, 우리나라 및 일본 제안서 비교(계속)

분류	의장 안('07. 11)	우리나라 제안서('10. 9)	일본 제안서('11. 1)
일반 예외	<p>〈운영비 금지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능력 증가 금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 어구의 사용 - 환경적 영향 경감 - 어업관리제도 이행 ○ 어업운영비 중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전직 또는 전직 교육 - 어업종사자의 조기은퇴 - 그 선박의 영구 어업금지 - 어업권의 영구취소 - 선박 소유자의 어업권 취소 ○ 이용자 특정 할당제도 <p>〈금지보조금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체 또는 어획능력 감축 프로그램 	<p>〈정당한 사회·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이직 또는 이직교육 ○ 어업종사자의 조기은퇴 ○ 생계형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Z내 어업으로 총어획량이 [X]%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생산비연계 소득보조 ○ 특정 자연재난 원조 <p>〈금지보조금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체 또는 어획능력 감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선박의 영구 어업 금지 - 어업권의 영구 취소 - 선박 소유자의 어업권 취소 ○ 이용자 특정 할당제도 	<p>〈운영비 금지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뜻하지 않은 경제 환경 변화와 같이 어업종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어족자원의 지속이용 관리를 위한 어업종사자 지원 ○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 어업종사자의 사회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p>〈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선박 건·개조, 운영비 금지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톤수 이하의 냉동고가 없는 EEZ내 조업어선, 외국항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개도국 특별 대우	<p>〈금지보조금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C는 예외 <p>〈금지 보조금 8개항에 대한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기계화 그물 회수 장치 사용하는 연안어업(생계형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활동에 직접종사 - 어획물의 생계형 소비 - 주로 고용주-고용인 관계와 무관 <p>※ 어업관리조건은 선택 사항</p> <p>〈소규모 어업에 대한 선박 건·개조 보조금에 대한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판 있는 경우 10m 이하 선박 또는 갑판 없는 선박 ○ EEZ내 조업 ○ 과학자원평가 ○ FAO의 peer review 		<p>〈금지보조금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C는 예외, 단, 일반규정 적용 조건 <p>〈개도국에 대한 선박 건·개조, 운영비, 가격지지에 대한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규정 적용 조건 ○ 영해, EEZ내에서 어업 조건 ○ 어업관리는 권고사항 <p>〈개도국에 대한 어선 제3국 이전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관리 및 일반규정 적용 조건 ○ 선박을 주고받는 국가가 같은 RFMO의 회원국일 것 ○ 선박을 이전받는 국가가 해당 RFMO의 보존조치를 준수할 것 ○ 이전 관련 약정을 공표할 것

-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S&D)와 관련해 칠레, 브라질 등 강경 입장 개도국들은 의장 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브라질 등 4개국 공동 제안서는 공해어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허용을 요청함
 - FFG 및 EU 등 대다수 회원국은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대우 요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소규모 어업과 관련해서 의장 안은 개도국에 대하여만 소규모 어업 보조금을 자국 EEZ내 어업에 대하여 허용토록 규정하였음
- 의장 안 이후 한국이 처음으로 기준년도 어획량의 X%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허용토록 하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개념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짐
 - 공조국(한국, 일본, 대만,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선진국에 대하여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것을 주장함
 - 미국 등 대다수 FFG는 선진국의 소규모 어업 예외 허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그 예외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여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소규모 어업이 일반예외에 포함되더라도 선개도국간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과 관련, 한국, 일본, EU 등 공조국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라는 입장임

3.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1)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1) 농림수산부문

-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3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음
- 농림수산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약 18조 원으로, 국가전체 지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출액은 약 15조 원으로, 국가전체의 지출의 4.8%를 차지함

〈표 2-5〉 우리나라 국가 전체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국가전체 총지출 *	농림수산식품분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07년	2,384,000	155,815 (6.5%)	135,539 (5.7%)
2008년	2,572,000	159,821 (6.2%)	139,549 (5.4%)
2009년	2,845,000	168,745 (5.9%)	146,363 (5.1%)
2010년	2,928,000	172,730 (5.9%)	146,738 (5.0%)
2011년	3,091,000	176,514 (5.7%)	148,644 (4.8%)

주 : 1) * 국가전체 총지출 : 국가전체 예산일반지출에 기금일반지출을 포함(내부거래지출 제외)

2) **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총지출 합계임

3) 비중은 국가전체 지출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재정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규모는 14조 8,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중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가 5조 3,31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나 크게 증가하였음
-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이 가장 크며, 다음이 수산업·어촌에 대한 예

- 산이 1조 2,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은 여타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데 비해 수산업·어촌부문의 예산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음

〈표 2-6〉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예산의 회계별·분야별 동향

단위 : 억 원

구 분		2010년(예산)	2011년(예산)	증감률 (2010/2011)
총지출(예산+기금)		146,738	148,644	1.3%
회계별	예산일반	96,210	95,328	△0.9%
	기금일반	50,528	53,316	5.5%
분야별	농림수산	142,350	144,051	1.2%
	- 농업·농촌	120,808	121,980	1.0%
	- 수산업·어촌	13,571	12,988	△4.3%
	- 식품산업	6,716	7,133	6.2%
	- 기타사업비	1,254	1,951	5.5%
	기본경비	4,388	4,593	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

(2) 수산부문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을 기준으로 수산분야의 사업 대부분은 수산·어촌분야에 속하나,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기반 구축, 가격 안정 등에 관련된 일부 사업이 농업·농촌분야에 속해 있음
 - 수산·어촌분야의 사업은 크게 수산경영,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물 유통·가공, 원양협력, 어촌어항 개발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업내용은 표와 같이 다양함

〈표 2-7〉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정책보조사업 종류(2011년 예산 기준 작성)

분 야	프로그램	세부사업
수산어촌	수산경영	어업인영여자금공급,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생계소득 및 안정, 소득보전 직불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수산자금이차보전, 수산장비(임대)활용, 수협경영정상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양식어업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폐업지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 자금, 면세 기자재, 어업용 면세유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사업단지지원,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 내수면자원조성,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조성, 수산어업 행정지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 어업정보통신지원, 어업지도단속, 어업협정 이행, 연근해어선감척,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육성, 적조피해직접양식어류방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운영,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친환경어구보급,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해양심층수활용 시설지원,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가공시설및운영지원, 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 비축사업,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수산동물질병관리,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위생관리, 수산물이력제 도입, 수산물자조금지원(출하조절),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 수산물시장시설 개선, 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 연근해어장환경개선, 우수수산물지원, 인천수산물물류가공센터,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해외수산물시설투자지원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
	원양협력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지원, 연안국과의 협력, 원양어업 활성화
	어촌어항 개발	국가어항건설, 국가어항관리, 대포항 건설, 어촌관광활성화
	수산연구	수산생물방역및검역체제구축, 수산시험연구, 수산연구시설및선박관리
	해양환경	해양환경 보전
농업농촌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어업기반구축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안전수산물공급체계구축, 웰빙 표고넉치브랜드개발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참고 작성

- 2011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수산부문의 예산규모는 1조 2,98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감소하였음
 - 회계 종류별로 보면 예산일반지출이 전체의 57%, 수산발전기금이 43%로, 예산일반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일반지출의 규모가 2010년에 비해 약 12% 감소한 반면, 수산발전기금은 8.4% 증가하였음
- 예산일반지출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27%, 농특회계가 40%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광특회계는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11년 기준)
 - 2011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농특회계의 규모가 19.7% 일반회계는 약 7.1% 감소하였으며, 광특회계는 소폭 줄어든 정도임
- 회계종류별 사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수산경영관련 정책사업이 가장 높은 7.1%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분야가 4.6%의 비중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반회계의 수산경영 분야 예산은 '수산자금 이차보전', '수협경영 정상화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년도 대비 약 25% 가량 감소한 반면,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은 신규로 '수산자원사업단' 등이 편성되고 어업지도단속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30% 가량 증가하였음
 - 농특회계에서는 어촌어항 개발 분야의 예산이 5.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인데, 특히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바다숲 조성'사업이 '수산자원사업단'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로 이관되면서 전년 대비 43%로 크게 감소하였음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전체의 16.6%로 가장 비중이 크지만 2010년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경영 사업은 '어업인영여자금'이 공자기금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증가하였음

〈표 2-8〉 우리나라 수산회계종류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총지출	13,571	12,988	△4.3%
○ 예산일반지출	8,433	7,419	△12.0%
- 일반회계	3,825	3,554	△7.1%
- 농특회계	3,739	3,003	△19.7%
- 광특회계	869	862	△0.7%
○ 수산발전기금	5,138	5,569	8.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 지원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보조와 용자의 비중이 각각 66%, 34%로 보조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금액은 물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음
 - 반면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형태인 용자사업은 전체 예산규모의 34%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약 9% 가량 증가하였음

〈표 2-9〉 우리나라 수산부문 지원형태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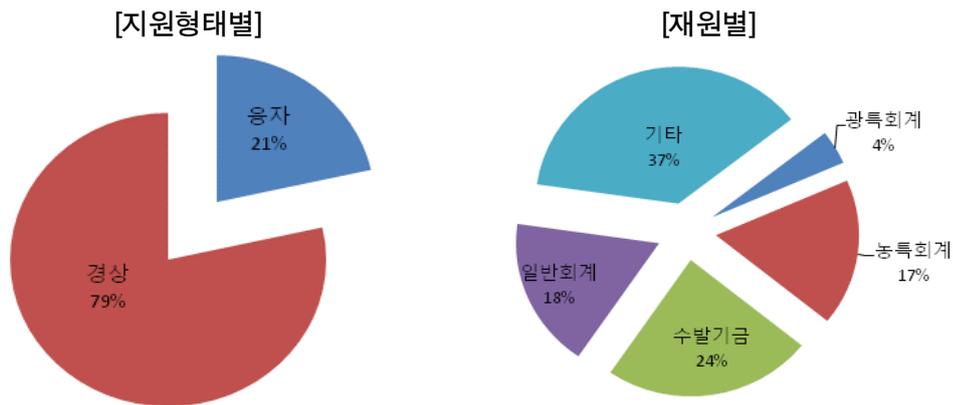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총지출	13,571	12,988	△4.3%
○ 보 조	8,933	7,931	△11.2%
- 일반회계	3,825	3,554	△7.1%
- 농특회계	3,739	3,003	△19.7%
- 광특회계	869	862	△0.7%
- 수발기금	501	512	2.2%
○ 용 자	4,638	5,057	9.0%
- 수발기금	4,638	5,057	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2)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1) 수산보조금 사업의 규모 및 종류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운용 규모(2010년 기준)는 약 2조 1,604억 원으로, 이 중 면세유와 면세기자재에 대한 보조가 전체 보조금 운용 규모의 약 3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수산보조금의 지원형태별 비중은 그림과 같이 경상사업이 7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용자사업은 21%의 비중을 차지함
 - 재원별로는 면세유와 면세기자재로 구성된 기타항목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이 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 : 기타는 면세유와 면세기자재를 통한 보조를 의미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2〉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유형별 구성비(2010년 기준)

- 사업별로는 수산어촌부문의 보조금 규모가 전체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수산경영 항목에 대한 보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경영 항목 내에서도 면세유와 면세 기자재에 대한 보조가 수산경영 사업의 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수산자금 이차보전이 11%로 나타남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의 경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 구매지원과 같이 수산발전기금의 용자사업이 중심적으로, 용자 형태의 지원이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분야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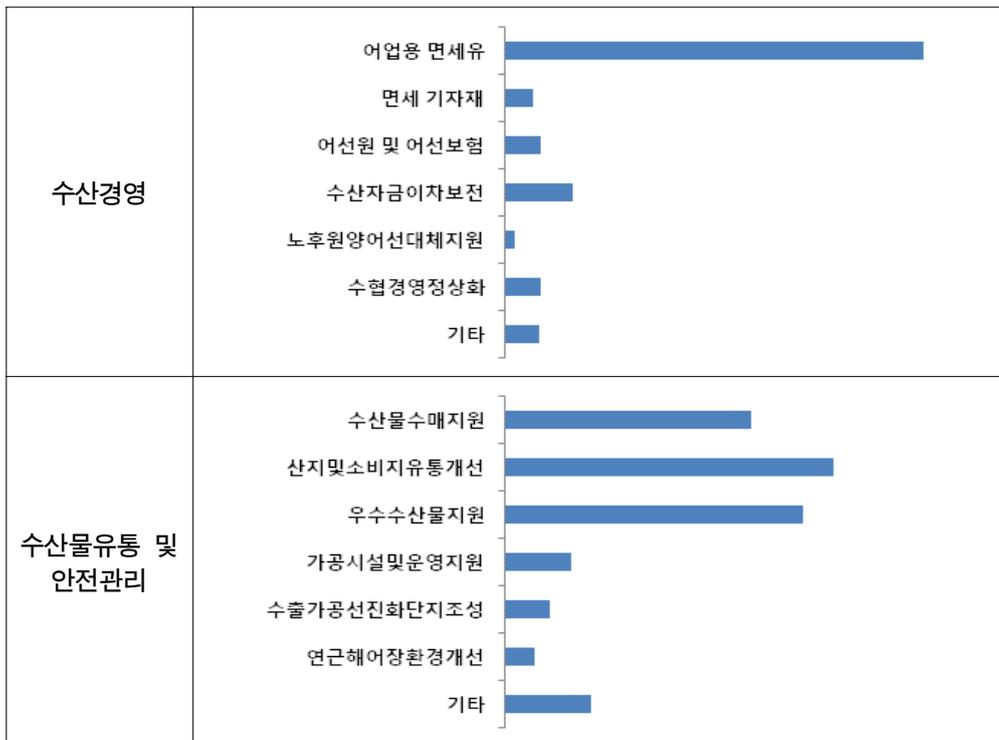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항목에 대한 지원은 전체가 보조형태로 이루어지며, 세부사업 중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본 항목 내에서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어촌어항 개발 항목의 경우 농특회계에 의한 국가어항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0〉 수산어촌부문의 단위사업별 보조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0년	비중
합 계	20,878	100%
수산경영	11,246	54%
수산연구	451	2%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551	12%
어촌어항 개발	1,494	7%
원양협력	102	0%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4,933	24%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	0%
수산물품질관리	100	0%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3〉 수산어촌부문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용(2010년 기준)

(2) 수산보조금 사업의 분류

- 수산보조금과 관련해 1997년에 제시된 의장초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을 분류해 보면 전체의 73%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됨(2010년 기준)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면세유 등의 운영비가 금지보조금 전체의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가격지지에 관련된 보조금(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수산물 구매지원 등)도 전체의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반예외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전체의 14%에 불과한데, 어업관리제도 이행에 관련된 보조금의 비중이 일반예외 항목 전체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세부사업의 대부분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로 이루어짐
- 기타 보조금은 주로 유통 및 가공시설, 위생 및 품질관리, R&D 사업이 포함됨

〈표 2-11〉 WTO/DDA 의장 안에 따른 수산보조금 분류(2010년 기준)

단위 : 억 원

보조금 분 류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0년	비중
금 지 보조금	소 계		15,785	73.1%
	가격지지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수산물 구매지원 등	4,065	18.8%
	선박 제3국 이전	원양어업 활성화 등	62	0.3%
	어선건조 수리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174	0.8%
	운영비	어업용 면세유 등	9,865	45.7%
	운영비 지원	원양어업 관리회사지원 등	30	0.1%
	항구기반시설 등	국가어항건설	1,574	7.3%
	소득보조	소득보전직불 등	15	0.1%
일 반 예 외	소 계		3,092	14.3%
	어업관리제도 이행	연근해어선 감척, 바다목장 조성, 어업지도 단속 등	2,746	12.7%
	어업인 이직	폐업지원금	50	0.2%
	환경영향저감기술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296	1.4%
기 타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위생 및 품질관리 등		2,727	12.6%
합 계			21,604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회계유형별로 보면 금지보조금의 경우 면세유와 기자재로 구성된 기타항목이 전체의 51%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이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예외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경우 농특회계가 전체의 4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반사업이 30%, 수발기금이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에 한정해 보면 83%가 금지보조에 해당하며, 11%만이 일반예외에 속함
 - 금지보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로 수매지원, 비축사업과 같이 수산물 가격 지지에 관련된 사업과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과 같은 어선건조수리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2〉 WTO/DDA 의장 안에 따른 회계별 수산보조금 분류(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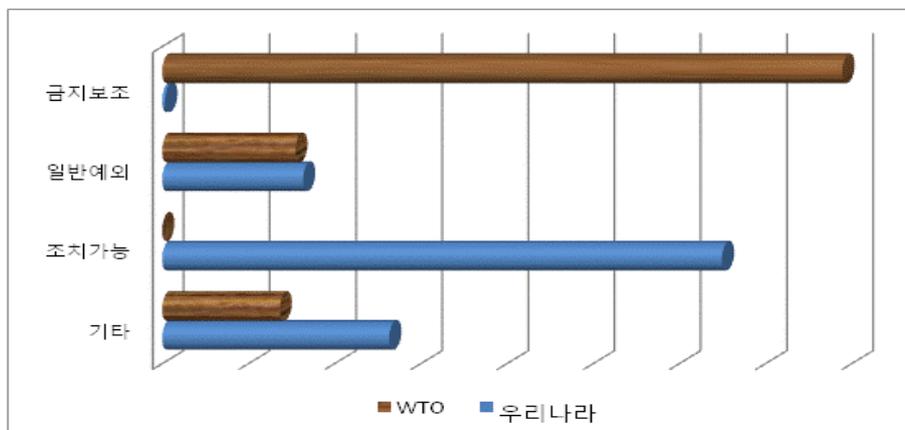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광특회계	수발기금	기타	합 계
금지보조	1,832	1,519	116	4,284	8,033	15,785
일반예외	922	1,417	212	542	-	3,092
기 타	1,071	803	540	312	-	2,727
합 계	3,825	3,739	869	5,138	8,033	21,604

주 : 기타는 면세유와 면세기자재를 통한 보조를 의미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을 분석해 보면 금지보조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음



주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2010년 기준임

〈그림 2-4〉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비교(WTO 의장안과 한국 측 제안서)

1. 국내 사례

1) 국내 농림수산물기금 현황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총 8개로 2011년 예산기준으로 약 7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규모의 33%에 이르는 규모이나 전년대비 약 24% 가량 감소하였음
 - 기금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림수산물 분야 기금의 3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농지관리기금이 15%로 약 1조 원에 이르고 있음

〈표 3-1〉 농림수산물분야 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안	비중	
			'10년	'11년
합 계	94,137	71,708	100%	100%
○ 농지관리기금	19,905	10,967	21.1%	15.3%
○ 양곡증권정리기금	21,801	6,215	23.2%	8.7%
○ 수산발전기금	5,651	6,426	6.0%	9.0%
○ 축산발전기금	7,223	6,415	7.7%	8.9%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1,505	9,880	12.2%	13.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405	4,384	4.7%	6.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298	25,859	23.7%	36.1%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349	1,561	1.4%	2.2%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0.11.

주 : 2010년 하반기 자료로 각 기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기금은 기획재정부의 존치평가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양한 기금 중에서도 수산발전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004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 이후 평가에서는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존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사업과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라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권고가 제기됨

〈표 3-2〉 농림수산분야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

구 분	2004년 8월	2007년 5월	2010년 5월
농지관리기금	존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통합 검토)	존치	존치
양곡증권정리기금	존치 (채무상환방안 마련)	존치	통합(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수산발전기금	존치 (농안기금에서 가격안정사업 이관)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축산발전기금	폐지 (수급조절사업의 농안기금 이관)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존치 (사업 재조정)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	존치	존치	존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존치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이관 검토)	존치 (운영 효율화 권고)	존치 (기금목적 재설정 및 사업체제 조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존치	존치

주 :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각 연도)를 이용하여 작성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개요

기금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근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법~제61조		
설치연도	1966년	운용개시 연도	1968년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규모	(2010년) 22,298억 원, (2011년) 25,859억 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급 - 가격안정 - 유통구조 개선 		
기금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몰수농산물 등 납입액 4. 타기금 출연금 		
기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출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격조절, 생산·출하 장려 또는 조절 2. 수출촉진 3.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등 출하 촉진·시설 및 운영 5. 상품성 제고 6. 기타 장관이 인정한 사업 ○ 지출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 및 유통명령 이행자 지원 2. 수매, 몰수농산물 이관, 비축 및 종사생산 사업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저온유통·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표 3-4〉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개요

기금명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설치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제25조		
설치연도	2005년	운용개시연도	2005년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2010년 규모	(2010년) 1,349억 원, (2011년) 1,561억 원		
목적	- 농어업재해 재보험사업		
기금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사업자가 낸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차입금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보험금의 지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지출 		

〈표 3-5〉 농지관리기금의 개요

기금명	농지관리기금		
설치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제39조		
설치연도	2005년	운용개시연도	2005년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10년 규모	(2010년) 19,905억 원, (2011년) 10,967억 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규모의 적정화 - 농지의 집단화 -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 해외농업개발 		
기금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금 2.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화사업의 청산금 융자 등 4.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10.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제도, 농지보전·이용 및 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표 3-6〉 수산물발전기금의 개요

기금명	수산물발전기금		
설치근거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수산업법 제76조~제80조		
설치연도	1999. 9(구법) 2009. 4(신법)	운용개시연도	2001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수협중앙회
2010년 규모	(2010년) 5,651억 원, (2011년) 6,426억 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기금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시·도지사가 매입시에는 경비를 제외한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6.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2. 기르는어업의 육성 3.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안법에 의한 수산물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가격안정 사업(4-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출하조정(4), 수산업관측(5), 계약생산·출하(6), 자조금사업(7), 가격예시(8), 구매(9), 물수 농산물(9-2), 유통협약 및 유통조정명령(12), 비축 및 출하약정(13), 구매·비축 손실처리(14)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FTA법(4-9조)에 의한 어업인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경쟁력제고(4 : 영어규모 확대, 생산기반시설정비, 고품질 수산물 생산, 친환경 수산물 생산유통 촉진,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품종개량 및 품질향상 R&D 등), 생산자 경영안정 소득보전(5), 폐업지원(6), 구매·비출가공 지원(7), 가공업지원(8), 지자체 지원(9)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수산업의 발전 등 장관이 정하는 사업 		

〈표 3-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개요

기금명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설치근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설치연도	2003	운용개시 연도	2003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농협중앙회
2010년 규모	(2010년) 11,505억 원, (2011년) 9,880억 원		
목적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금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금 2. 양곡 수입시 수입이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차입금 5. 양곡 수입이익금의 이자 수입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현지 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업 		

〈표 3-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개요

기금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5조		
설치연도	2004	운용개시 연도	2004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년 규모	(2010년) 4,405억 원, (2011년) 4,384억 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지원 		
기금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구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해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 한-칠레 FTA 발효이후 새로운 협정체결시 기금지원계획 수정 2. 기금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출연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차입금 -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2.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3. 농업인들의 폐업지원 4.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 		

〈표 3-9〉 축산발전기금의 개요

기금명	축산발전기금		
설치근거	축산법 제43조~제48조		
설치연도	1976	운영개시 연도	1977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위탁기관	농협중앙회
2010년 규모	(2010년) 7,223억 원, (2011년) 6,415억 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발전 - 축산물 수급 원활 - 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차입금 5.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 8. 한국마사회장 특별적립금중 기금 출연금 		
기금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5.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6. 가축 위생 및 방역 7.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 사업,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9.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10.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설치목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196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해 기금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1968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사업대상에 수산물과 임산물, 사업으로 유통구조 개선 등이 추가되고, 여타 기금이 통합되는 등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농안기금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조절 및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 등의 출하 촉진·시설 및 운영, 상품성 제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자조금 및 유통명령 이행자 지원, 구매 또는 몰수농산물의 이관, 비축 및 종자생산 사업, 기금관리 하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의 추진에 이용됨
- 농안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용·관리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집행·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음

(2) 재원조달 현황

- 농안기금은 1968년 정부출연금 51억 원으로 조성되어, 2010년 현재 조성액은 2조 2,298억 원에 이룸
- 농안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몰수농산물 등 납입액, 타기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됨
 - 주요 재원은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농산물 판매 수입, 수입권 공매를 통한 부담금 수입, 종자판매 수입, 융자원금 회수, 융자이자 수입, 예치이자 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임

- 농안기금의 경우 2005년 이후 정부출연금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정 의존도가 낮고 자금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재원(제55호)	기금의 용도(제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 몰수농산물 처분, 수입이익금 납입액 ○ 타기금 출연금 ○ 한국은행 또는 타기금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 조절, 생산·출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 수출 촉진 ○ 농산물 보관·관리 및 가공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 농산물 상품성 제고 ○ 기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 사업 ○ 자조금 및 유통명령 이행 지원 ○ 수배·처분, 몰수농산물 처분, 비축사업 및 당해사업 관리 ○ 기금관리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기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과 종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표 3-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0년 (계획)
자체 수입	소 계	20,702	20,696	20,747
	재산수입	614	522	618
	- 정부출자 수입	6	4	-
	- 이자 수입	608	518	618
	경상이전수입	980	1,401	1,056
	- 법정부담금	443	759	788
	- 기타	537	642	268
	관유물매각대	5,769	5,955	6,170
	융자원금 회수	13,339	12,818	12,903
정부내부 수입	311			
여유자금 회수	2,682	2,917	1,551	
합 계	23,695	23,613	22,298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 현황」, 2010.6.

(3) 기금 사업 현황

- 농안기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사업은 산지 및 소비자유통 활성화 사업이 전체 사업비(2010년 기준) 중 약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사업비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남
 - 유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용자사업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사업은 경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안기금 중 유통구조 개선 관련 사업은 기금준치평가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시되었으나, 가격안정사업은 기금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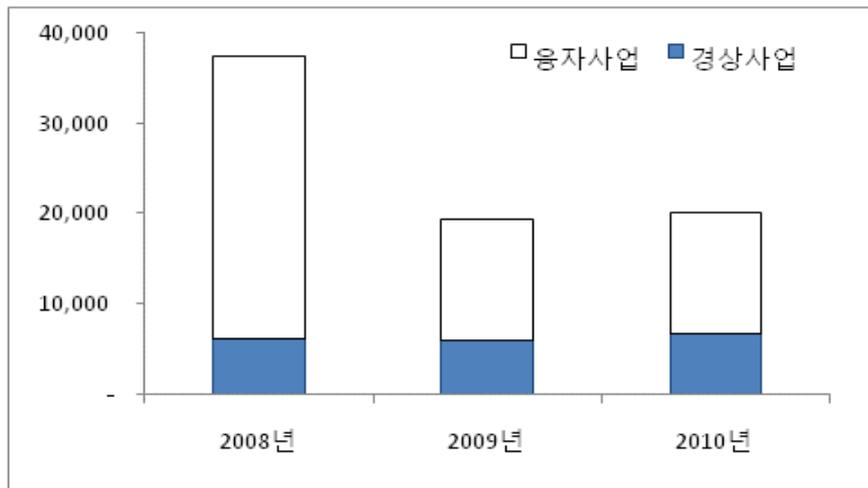
〈표 3-1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결산)	2010년(계획)	2011년(계획)	비중 (2010년)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	577,244 (52,192)	608,692 (49,034)	588,439 (42,660)	26.7% (2.2%)
농산물 수출 촉진	396,094 (364,608)	412,162 (364,609)	446,162 (364,610)	18.1% (16.0%)
산지유통 활성화	592,963 (574,973)	594,224 (574,974)	575,568 (574,975)	26.1% (25.2%)
소비자유통 활성화	280,715 (277,862)	287,912 (277,863)	265,745 (277,864)	12.6% (12.2%)
농산물 유통 개선	59,000 (59,000)	61,452 (59,001)	104,478 (59,002)	2.7% (2.6%)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	50,700	50,000	2.2%
농업전문조합출자	9,000	9,000	-	0.4%
식품산업 육성	19,984 (12,704)	43,575 (12,704)	85,532 (12,704)	1.9% (0.6%)
기금운영비	54,687	58,622	60,105	2.6%
여유자금 운용	371,643	154,176	329,877	6.8%
정부내부거래			80,000	0.0%
합 계	2,361,330	2,280,515	2,585,906	100%

주 : ()내는 용자사업의 비중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현황」, 2010.6.

- 지원 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용자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용자사업의 비중도 줄어 전체 사업비의 69%를, 2010년에는 67%로 감소하였으나,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2010.6) 참조 작성

〈그림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비 추이

- 농안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는 0~4%까지 사업별로 다양한데, 3% 이상의 사업수가 10개로 대다수를 차지함
 - 사업금액 기준으로는 3~4%대의 사업비가 전체의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1~4% 대인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약 39%를 차지함

〈표 3-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별 현황(2010년 기준)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사업개수	사업액	비중 (사업액 기준)
0.0%	1	200	1.5%
3.0%	5	537	4.0%
4.0%	2	112	0.8%
0.0-4.0%	2	1,281	9.5%
1.0-4.0%	1	5,242	38.7%
3.0-4.0%	3	6,175	45.6%
합 계	14	13,547	100%

자료 : 기획재정부(2010.6) 참조 작성

3) 축산발전기금

(1) 설치목적

- 축산발전기금은(이하 축발기금)은 1974년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시작되었음
 - 이후 1976년 「축산법」 개정으로 기금 설치 및 재원 추가의 근거가 마련되고, 197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부출연까지 이루어져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가 시작되었음. 1993년에는 축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수급 원활화, 가격 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주무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이며,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축발기금의 규모는 2010년 현재 약 7천 223억 원 가량으로, 수입원의 안정적 확충과 지출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2010년 이후에는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14〉 축산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동향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 자체수입(a)	1,285	1,563	1,823	3,226
	· 용자원금회수	5,675	4,435	3,831	3,947
	· 여유자금회수	2,719	2,648	1,484	50
	합 계	9,679	8,646	7,138	7,223
지출	· 사업비	5,447	7,126	7,044	5,750
	· 기금운영비(c)	39	36	37	39
	· 정부내부지출(d)	1,545	-	-	33
	· 여유자금운용	2,648	1,484	57	1,401
	합 계	9,679	8,646	7,138	7,223
수지차[a-(b+c+d)]		△2,117 (△2,055)	△984 (△947)	△2,025 (△1,982)	△136

주 : 1) 수지차의 '()'내는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적 개념의 결산 상 수지차를 의미함
 2) 2009년까지는 실적, 2010년은 계획임
 3) 향후 관련부처 협의, 축산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기금준치 보고서」, 2010.2., p.83.

(2) 재원조달 현황

- 축발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 보조금/출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대체초지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 한국마사회장 특별적립금 중 기금출연금으로, 축산물과 관련된 사업에서 대부분 조달되고 있음

〈표 3-15〉 축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재원(법 제44조)	기금의 용도(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한국마사회납입금 ○ 축산물수입이익금 ○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차입금 ○ 대체초지조성비 ○ 기금운용수익금 ○ 전통소싸움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사료 수급 안정 및 사료자원의 개발 ○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가축위생 및 방역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기금준치 보고서」, 2010.2., p.15

- 축발기금의 재원은 1980년대 이후 쇠고기의 본격 수입으로 수입이익을 기금재원으로 납입하게 함으로써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용자원리금, 한국마사회 납입금의 비중이 높아 전체 재원규모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5월 한국 마사회법 개정으로 마사회이익금 출연율을 당기순이익의 48%에서 56%로 상향하는 등 수입원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였음
 - 반면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타 기금에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편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출연금은 전무함

〈표 3-16〉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실적)	2010년 (계획)	2011년 (계획)	비 고
· 축산물수입이익금	1,441	1,722	1,722	공매납입금
· 대체초지조성비	2,891	2,005	2,005	초지 전용 부담금
· 한국마사회납입금	131,232	170,077	165,000	당기순이익 중
· 용자원리금	402,845	413,978	412,321	용자원금 및 이자
· 예치금이자	4,294	1,800	2,000	금융기관 예치이자
· 사업소 수입 등	22,666	17,695	18,215	정액 및 생장물 등
· 여유자금회수	148,416	5,000	40,252	전년도 이월금
· 정부내부수입		11,000		공자기금
합 계	713,785	722,277	641,5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기금존치 보고서」, 2010.2., 참고 작성

- 축발기금은 기금존치평가에서 재원 조성 방법과 안정성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기금사업과의 연계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3) 기금 사업 현황

- 축발기금은 1990년대 이후 사업 수요의 증가로 축산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기금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축발기금의 사업분야를 보면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이용, 축산자조금 지원 등으로, 축산 분야에 대한 사업 상당 부분을 망라하고 있음
 -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 제고’로 2010년 기준으로 전체사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축산 지원’이 전체의 약 17%, ‘수급 관리’가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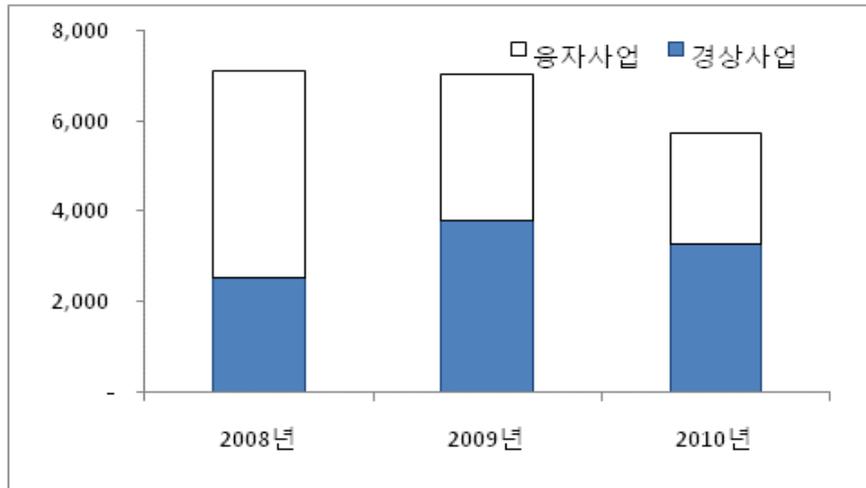
〈표 3-17〉 축산발전기금 운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결산)	2010년(계획)	2011년(계획)	비중 (2010년)
축산물 수급 관리	128,881 (500)	118,045 (600)	121,791 (540)	16.3% (0.1%)
축산 기술 보급	34,340 (5,742)	59,719 (13,678)	48,115 (10,942)	8.3% (1.9%)
축산업 경쟁력 제고	175,354 (169,642)	212,435 (197,260)	180,715 (169,785)	29.4% (27.3%)
축산물 위생·안전성	28,273	34,104	27,901	4.7%
가축 방역	24,296	28,175	34,889	3.9%
친환경 축산 지원	100,669 (34,366)	124,460 (34,400)	130,780 (58,835)	17.2% (4.8%)
공자기금 이자 상환	-	3,300	5,554	0.5%
기금 운영비	3,422	3,854	3,937	0.5%
여유자금 운용	5,714	138,185	87,833	19.1%
2009년 종료 및 이관사업	213,086	-	-	0.0%
합 계	713,785	722,277	641,515	100%

주 : ()내는 용자사업의 비중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현황」, 2010.6.

- 축발기금 사업비 중 용자사업과 경상사업의 규모는 2008년의 경우 용자액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감소하여 경상사업의 규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자료 : 기획재정부(2010.6) 참조 작성

〈그림 3-2〉 추산발전기금의 사업비 추이

- 이 중 용자사업의 운용 현황을 보면 대출이자율은 0~4%까지 사업별로 다양함
 - 3% 대출이자 사업의 개수가 많으나, 사업액 기준으로는 0~4%대 사업이 전체의 54%를, 다음으로 3~4%대의 사업도 전체의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용자사업의 상환기관은 10~15년 이상의 장기상환 사업(3년 또는 5년 거치)을 비롯해 중장기의 상환기간을 설정한 사업의 분포도가 높은 편임

〈표 3-18〉 추산발전기금 용자사업의 대출금리별 현황(2010년 기준)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사업개수	사업액	비중 (사업액 기준)
0.0%	1	6	0.2%
2.0%	1	240	9.8%
3.0%	4	273	11.1%
0.0-4.0%	2	1,320	53.7%
3.0-4.0%	2	620	25.2%
합 계	10	2,459	100%

자료 : 기획재정부(2010.6) 참조 작성

- 축발기금의 사업은 과거 기금준치평가(2004년, 2007년)에서 백화점식 사업 구조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0년 평가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화하여 가축공제사업은 농특회계로, 긴급경영안정·사료구매·도축가공업의 이차보전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고, 2010년 이후 학교우유급식, 쇠고기이력추적, 도축장구조조정 등 위생·안전, 방역 분야 등은 예산사업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추진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품질 고급화 지원·직거래 이동차량 등 한·미FTA 대책에 따른 한시적 사업은 지원이 중단되었음

2. EU의 수산기금

1) 유럽수산기금의 개요

- EU는 역내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에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개편함
 - 외적으로 수산자원감소와 해양환경의 황폐화 등으로 수산업 자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 소비 증가에 따라 EU 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60% 이상이 수입되면서 점차 양식업의 중요성이 인지하게 됨
 - 또한 소비자들이 가공제품을 선호하면서 수산가공업도 점차 발달하였으며 동시에 수산물 구매시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원산지, 품질, 안전성을 주요한 구매결정요인으로 고려하게 되었음
- 일련의 이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수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유럽수산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EFF)이 마련되었음
- 따라서 EFF는 EU 수산부문의 주요한 재정지원정책으로 2007~2013년 7개년동안 운영될 예정임²⁾
 - 유럽수산기금의 주요 목적은 경제성있는 수산업으로의 전환, 친환경 수산부문 개발, 수산업 종사자 인구의 복지 증진 및 양식업을 포함해 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임
 - 타기금과 더불어 EFF가 공동 지원하는 수산분야 세부사업은 수산자원과 어획능력, 환경보호와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수산업 종사자의 양성 평등 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음
- 7년간 EFF 총 예산은 43억 유로이며, EU의 모든 회원국이 신청가능하나 우선적으로 저개발지역(less developed regions)에 우선됨
 - 특히 총 예산의 75%(32억 유로)는 'convergence objective' 지역, 즉, 1인당 국민총생산이 EC 평균의 75%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됨

2) EFF는 1993년에 마련된 수산업지원을 위한 금융정책(FIFG)을 대체하였음

- EFF는 공동재정지원(co-financing)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EU의 지원(aid)은 기타 공적 보조금과 상호 보완·연계됨
- EFF는 수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이하 FIFG)을 대체한 것으로 FIFG보다 관리·시행이 간소화되었음
 - EFF는 자원회복계획, 선별적 어구 사용 어가에 대한 지원,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수익창출모델 개발, 어촌지역의 균형발전(conversion)을 위한 인센티브, 양식업 지원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환경과 내수면어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FIFG하에서는 신규어선건조 또는 어선세력 증강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EFF는 국가, 광역시, 지자체의 예산 지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일정부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표 3-19〉 FIFG의 지원사업

우선 분야		사업수	세부 사업
priority axis 1	어획노력 조정	3	어선 폐기, 어선 제3국이전, 합작사업
priority axis 2	어선 현대화	3	어선 신규건조, 기존 어선의 현대화사업, 공적자금으로 현대화한 어선의 회수사업(withdrawal)
priority axis 3	수산자원 및 양식수산업 어항시설, 수산가공업·마케팅·내수면어업의 보호	5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 양식업, 어항시설, 수산가공업및마케팅, 내수면
priority axis 4	기타 조치	6	연안 소규모어업, 사회경제적 조치, 증진(promotion), 교역 회원국에 의한 운영, 기타 금융보상의 잠정적 중단, 혁신사업지원
priority axis 5	기술지원	1	기술지원
priority axis 6	기타 구조적 기금의 의한 금융 정책	2	ERDF금융지원조치, ESF 금융지원조치

자료 : Ex-post evalua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0~2006, European Commission, 2010

2)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종류

○ EFF의 기금사업은 크게 5개 분야(5 priority axes) 19개 사업으로 분류됨

〈표 3-20〉 EFF의 지원사업

사업분야		사업수	세부 사업
priority axis 1	어선 적응조치	6	영구폐업, 조업잠정적중단사업, 어선투자지원사업, 연안 소규모어업지원사업, 사회경제적 보상사업, 어업후계자지원사업,
priority axis 2	양식업, 내수면어업, 가공수산업, 수산업 마케팅	6	양식업투자지원사업, 수산환경보호사업, 국민건강사업, 동물건강사업, 내수면어업발전사업, 수산업의가공및 마케팅사업
priority axis 3	공익사업	6	공동조치, 수산생물자원의 보호 및 개발, 어항·양륙지 및 대피소 구축사업, 신규시설개발사업, 수산업홍보캠페인사업, 수산분야혁신에 대한 시범사업, 어선 용도변경을 통한 현대화사업
priority axis 4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1	연안소규모어업어업지원사업, 사회경제적 조치, 증진(promotion), 교역 회원국에 의한 운영, 기타 금융보상의 잠정적 중단, 혁신적 조치
priority axis 5	기술지원		기술지원
합 계			19개 사업

자료 : Ex-post evalua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0~2006, European Commission, 2010.

- 첫째(priority axis 1), 어선의 적응조치분야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자원의 장기 이용을 위해 어선의 어획노력조정이 주요한 골자이며 6가지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영구폐업지원사업은 조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어선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은 반드시 2년 이하의 어획노력조정계획 또는 어선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함. 이 때 보상금은 어선의 시장가치, 동력, 매출 등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지원됨
 - 조업잠정적중단사업은 어획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선주 또는 선원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어기(fishing calendar) 또는 관행에 따른 계절적 금어기는 보상대상이 아님. 단지 자원관리, 어업협정의 비갱신 또는 구조조정계획 등에 의한 잠정적 조치만이 해당되며 자연재해, 국민건강조치와 같은 예외적 사항에도 보상금이 지원됨
 - 어선투자지원사업은 5년이상된 어선이 특정작업 또는 특정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어선주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은 어선의 현

재가치, 선령, 톤, 동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됨. 이때 특정장비는 어획능력 증가없이 어선의 안전제고, 작업환경 개선, 위생개선, 에너지효율화, 선별성을 제고시켜야 함

- 연안소규모어업지원사업이란 EU에서 연안의 소규모어업이 수산경제 및 연안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길이 12미터 미만의 예망어구를 사용하지 않은 연안 어선에 기금을 지원함
- 사회경제적보상사업은 수산자원고갈 또는 수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훈련, 업종전환 프로그램, 조기은퇴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포함됨
- 수산후계자지원사업이란 최초 어선구매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40세미만의 어업인으로 최소한 5년간의 수산경력 보유해야 함. 또한 어선의 간접 소유자인 경우에는 기금 지원 연령이 5~30세이며 어선은 길이 24미터 이하이어야 함. 지원금은 어선구매금액의 15% 또는 5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둘째(priority axis 2)는 양식업, 내수면어업, 수산가공업 및 마케팅지원분야로 6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음

- 양식시설투자지원사업은 EU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양식시설설비 투자를 지원해 줌. 영세기업이 가장 우선 지원대상이며 그 다음으로 소기업, 중소기업 순임. 750명 이하의 종업원 또는 매출 2억유로 이하의 대기업도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액이 가장 낮음.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친환경적 양식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수산환경보호사업은 양식업자가 법으로 규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 생산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함. 지원은 표준생산 대비 수입 감소,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또는 투자비용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함(예: 유기양식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양식업체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호사업이란 유독플랑크톤으로 해조류 채취를 할 수 없는 생산업자의 지원 등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생산을 할 수 없는 어업인에 대한 보상지원제도임
- 동물건강보호사업은 양식수산물 어병억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어병 발생시 양식수산물의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지역의 수질 정화사업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지원제도임. 이 때 양식생산자들은 관련부처에서 규정한 계획에 따라 EFF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내수면어업투자지원사업은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 위생, 품질, 인간 또는 동물 건강 또는 환경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육상 인프라(건물 건설, 증축 및 현대화)에 대한 지원사업임. 단, 내수면어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내수면지역에서만 조업하는 선박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업활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EC에 어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수산업가공및마케팅지원사업이란 수산전반의 고용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근로자 훈련, 장비 및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임. 해당 지원대상은 수산물 생산 및 어분 생산업자,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사업도 가능함 (단 소매분야는 해당 사업 지원대상 아님). 지원우선순위는 영세사업자, 소규모사업자, 중소기업순으로 우선순위이며, 750인 이하 또는 매출 2억 유로이하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한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셋째(priority axis 3)는 공동이익사업(measures of common interest)으로 공동조치사업, 수산생물자원의 보호 및 개발 등 총 6가지의 세부사업이 포함됨

- 공동이익사업(collective actions)이란 무역협회, 조합, 민간 등 대표조직이 공동이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관리계획개발사업, 바다속 폐어구 청소를 위한 캠페인 조직, 상품의 이력 또는 라벨링 개선사업, 생산자협회의 구조조정 등이 해당됨
- 수산생물자원의 보호 및 개발사업이란 공공단체, 준공공기관 또는 EC 회원국이 지정된 기타 기관이 수산생물자원의 보호 또는 개발을 위한 사업 수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 인공산호초 설치(예비조사 및 과학적 모니터링 병행), 강에서 어류 회유로 복원사업, Natura 2000지역의 자원관리계획 수립등이 해당됨
- 어항·양륙지 및 대피소설립사업이란 어항 또는 양륙지의 공공관리자 또는 민간관리자가 기존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임. 여기에는 수산물 위판시설의 현대화 또는 전산화 사업, 냉장유통시설의 현대화, 양륙지역의 안전개선사업도 포함됨. 필요한 경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어업 대피소 설치사업도 포함됨

- 수산물 수출 신규 시장 개척사업이란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수요 증진 지원사업임. 수산물품질강화를 위한 인증제 및 라벨링 제도운영, 수산업홍보(비대중 어종의 홍보 또는 수산업의 일반적 이미지 개선사업), 또는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및 무역박람회 참여 등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 사업임
 - 수산물홍보캠페인사업 : 포괄적 홍보캠페인사업으로 여기에는 특정 기업의 브랜드나 특정상품을 겨냥해서는 안됨. 그러나 홍보되는 상품이 인정된 지리적상품이거나 규정(Regulation(EC) NO 510/2006에 근거한 지정원산지인 경우에는 특정 국가, 지역, 어업지역을 나타낼 수 있음. 특정양식수산물에 적용된 유기생산기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음. EFF 지원금은 모든 캠페인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수산혁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란 양식생산 신기술 개발, 선별적어구개발, 신어업관리기술과 관련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이러한 시범사업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계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수행할 경우에만 승인되며 시범사업 총 비용이 100만 유로를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독립기관의 예비 평가를 받아야 함
 - 어선의 용도변경을 위한 현대화사업: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은 EFF 지원금을 통해 어선을 수산훈련장소, 연구선, 박물관 또는 기타 비조업 활동목적으로 개조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해당 어선은 EC의 등록어선에서 삭제되고 면허도 취소되어야 함. 어선의 이 같은 새로운 사용은 회원국의 기국하에서 이뤄져야 함
- 네 번째(priority axis 4) 분야는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부분임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은 NUT3³⁾보다 인구가 적은 지구(district), 마을(county)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수산업이 감소추세이거나 또는 소규모 단위의 어업공동체 지역에 우선 배정됨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주체는 해당 지역 수산업 대표 및 정부 및 민간 대표가 형성한 지역단체(local group)임. 이 때 EFF는 어촌 지역에 배정되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함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접근방법은 경제성, 환경, 사회 복지(social

3) EU는 행정단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NUT1 지역은 300~700만 명, NUT2 지역은 80만~300만 명, NUT3지역은 15~80만 명임(Regulation (EC) No 1059/2003)

welfare) 세 가지 측면에 근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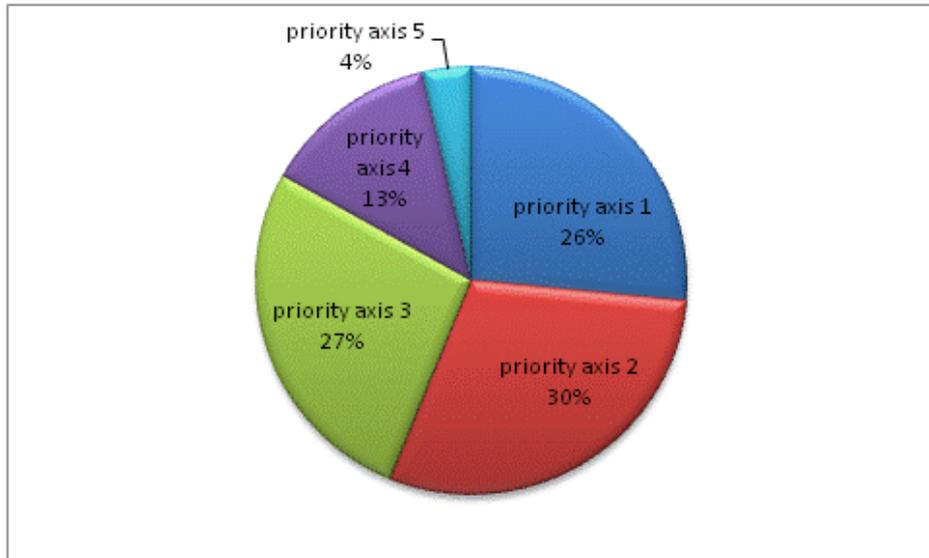
- 또한 전략적으로 지역단체는 공적자금(public financing)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함.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에코관광지역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연적 또는 건축 유산 발굴, 수산업 내외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 다섯 번째(priority axis 4) 분야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임

- 이는 수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EC 회원국이 수산분야 행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EC는 매년 EFF 예산(총 3470만 유로)의 최대 0.8%를 필요한 분야에 지원함
- 회원국은 자국의 EFF 기금의 최대 5%를 사용해야 사업운영(준비, 추진, 평가, 공시,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3)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 2007년 EFF 기금이 설치된 이후 총 26개의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19개가 세부사업으로 채택되었음
- 2008년 기금의 지역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43억 유로)의 약 5.8%가 집행되었으며, 이 중 79%는 지역융합(regional convergence), 20%는 비융합지역(non-convergence)에 지원됨
- 사업부문별 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priority axis 1,2,3 분야에 기금이 골고루 지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양식·내수면·수산가공업및마케팅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전체 기금의 30% 차지, 11억 6천 유로)
 -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priority axis 4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입되어 201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임



자료 : 유럽수산기금시행에 관한 2008년 연차보고서

〈그림 3-3〉 유럽수산기금의 분야별 지원 비중

- 회원국의 분야별 기금 사용 현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EU 가운데 수산업이 가장 발달한 스페인의 경우 EU 전체 기금의 26.3%인 11억 유로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priority axis 1,2,3 분야에 각각 35%, 30%, 27% 등 골고루 지원되고 있음
 - 어선의 영구 조업 중단 등 어선적응조치는 어선의 과잉어획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써 수산기금을 통해 EC는 2013년 말까지 어획능력을 15%(KW와 GT 모두 해당) 감축을 목표로 함
 - 아일랜드는 경우 전체 기금의 82%를 어선적응(priority axis 1)에 사용하고 있음

〈표 3-21〉 EU 회원국의 분야별 수산기금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천 유로

지역	Priority axis 1		Priority axis 2		Priority axis 3		Priority axis 4		Priority axis 5		Total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BE	7,562	28.8	5,000	19.0	9,488	36.1	2,900	11.0	1,312	5.0	26,262
BG	8,001	10.0	36,004	45.0	20,002	25.0	12,001	15.0	4,000	5.0	80,010
CZ		-	11,927	44.0	13,824	51.0		-	1,355	5.0	27,107
DK	21,365	16.0	7,150	35.3	46,015	34.4	12,461	9.3	6,684	5.0	133,675
DE	8,145	5.2	57,560	36.9	68,688	44.	19,438	12.5	2,034	1.3	155,865
EE	15,265	18.0	24,584	29.1	21,210	25.1	19,282	22.8	4,228	5.0	84,568
IE	34,766	82.2		-	6,000	14.2	1,501	3.6		-	42,267
EL	77,272	37.2	59,690	28.7	32,320	15.6	33,300	16.0	5,250	2.5	207,832
ES	403,068	35.6	344,241	30.4	316,511	28.0	49,336	4.4	18,735	1.7	1,131,891
FR	59,621	27.6	63,029	29.2	85,049	39.4	5,700	2.6	2,653	1.2	216,053
IT	161,250	38.0	106,086	25.0	106,086	25.0	16,974	4.0	33,947	8.0	424,343
CY	2,200	11.2	3,250	16.5	12,924	65.5	1,000	5.1	0	1.8	19,724
LV	20,861	16.7	46,129	36.9	24,153	19.3	28,911	23.1	4,961	4.0	125,016
LT	13,668	25.0	22,431	41.0	9,249	16.9	6,694	12.2	2,672	4.9	54,713
HU		-	24,164	69.3	8,944	25.7		-	1,743	5.0	34,851
MT	2,175	26.0	1,760	21.0	4,095	48.9		-	0	4.1	8,372
NL	16,913	34.8	7,379	15.2	16,903	34.8	4,987	10.3	2,395	4.9	48,578
AT		-	5,164	98.2	0	1.0		-	0	0.9	5,259
PL	168,841	23.0	146,819	20.0	146,819	20.0	234,910	32.0	36,705	5.0	734,093
PT	53,065	21.5	78,058	31.7	90,027	36.5	17,403	7.1	7,931	3.2	246,485
RO	9,975	4.3	105,000	45.5	30,000	13.0	75,000	32.5	10,739	4.7	230,714
SI	2,164	10.0	7,141	33.0	7,574	35.0	2,164	10.0	2,597	12.0	21,640
SK		-	10,468	76.5	2,536	18.5		-	684	5.0	13,689
FI	3,445	8.7	16,990	43.1	14,784	37.5	3,606	9.1	1	1.6	39,449
SE	13,666	25.0	10,933	20.0	19,133	35.0	8,200	15.0	2,733	5.0	54,665
UK	39,635	28.8	33,590	24.4	49,621	36.0	11,598	8.4	3,384	2.5	137,828
합계	1,142,924	26.6	1,274,547	29.6	1,162,007	27.0	567,366	13.2	158,105	3.7	4,304,949

주 :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Z 체코, DK 덴마크, DE 독일, EE 에스토니아, IE아일랜드, 디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IT 이탈리아, CY 사이프러스, LT 라트비아, HU 헝가리, MT 말타, NL 네덜란드, AT 오스트리아,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FI 핀란드, SE스웨덴, UK 영국

자료 : 유럽수산기금시행에 관한 2008년 연차보고서

4) 시사점

- EU 지역의 수산기금 EFF는 과거의 FIFG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FIFG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EFF는 어획노력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WTO 수산보조금협상의 일반예외에 해당하는 어선과 선원의 안전 및 어획능력 증가 금지조건과 관련된 것임
 - FIFG하에서는 어선폐기, 어선 제3국이전, 합작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EFF하에서는 어선감척 뿐만 아니라 어선의 지속적 이용 및 친환경어구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어선의 안전 및 선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되고 있음
- 더불어 어선의 적응조치부문에서 연근해 소규모어업지원사업 및 사회경제적보상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에 대해 복지 차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국내 수산발전기금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EFF 기금 운영에서 양식·내수면·수산가공및마케팅지원사업이 전체 기금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 역내 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수산기금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연근해 소규모어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수산업의 기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향후 WTO 금지보조금 항목으로 포함될 개연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친환경수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구 사용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 것임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1) 개요

- 수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금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년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수산발전사무국을 설치
 - 사무국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 당시 5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8개의 경상사업과 24개의 용자사업으로 성장하였음
 - 기금운용 초기에는 어업경영자금 용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안기금의 이관을 계기로 예산지원 방향을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과 수산물가공업의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어업기자재 생산 촉진, 원양어업 육성 등으로 구분됨
 -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용자사업으로 구분
- 세부내용
 - 해양환경개선사업 :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과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어장환경 개선
 - 자원관리사업 : TAC 경영개선자금지원, 어업질서 확립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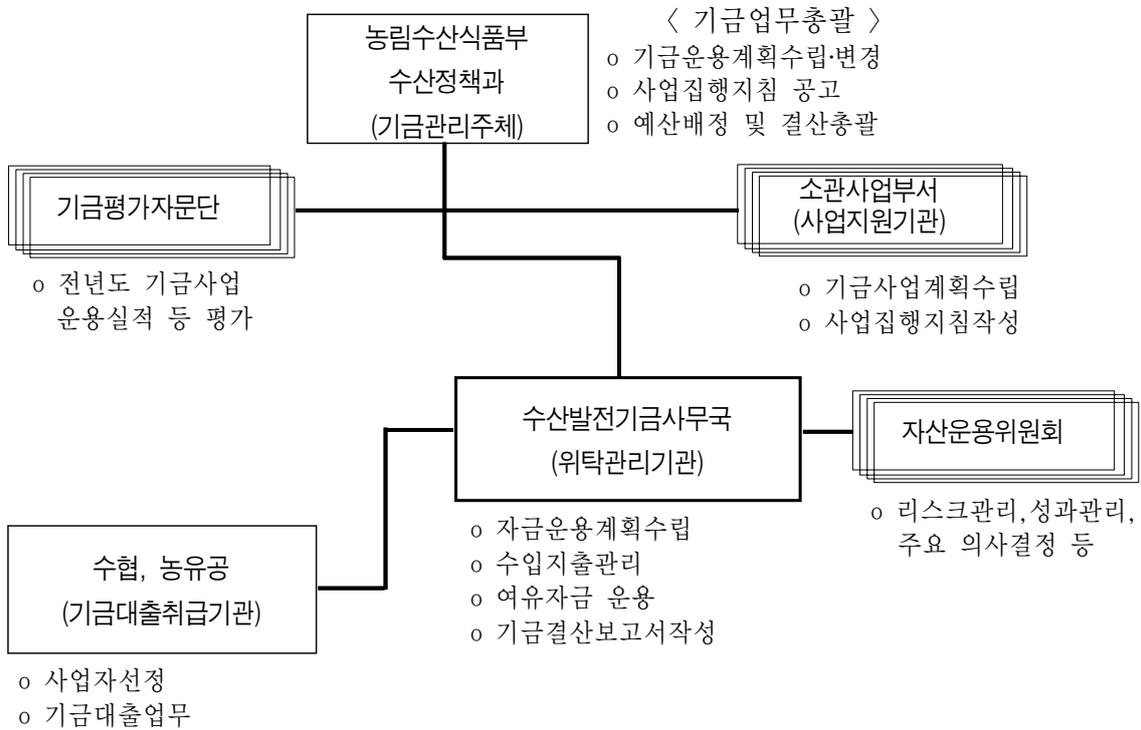
- 기르는 어업육성사업 : 해면양식시설, 내수면 양식시설, 사료저장시설 지원
 - 가공 및 유통사업 :산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수산물 유통자금,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가공시설 현대화, 산지 가공시설자금 지원
 - 어업기자재 생산촉진사업 : 어망생산 운영자금, 양식기자재 구입자금,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자금 지원
 - 원양어업사업 :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자금지원
 - 어업인력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 이상과 같은 수산발전기금은 현재도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하기 힘들 경우 필요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2) 연혁

- 수산발전기금은 1999년 ‘어업인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한 뒤 200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운용되기 시작하였음
 - 1999년 9월 7일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 마련
 - 2001년 7월 31일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 개시)
 - 2003년 1월 1일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개시
 - 2005년 1월 1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
 - 2006년 1월 1일 :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개시
 - 2007년 8월 3일 :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 개시
 - 2008년 8월 1일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징수 개시
 - 2009년 4월 22일 :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수산발전기금 근거법 편입

3) 기금 운용체계

- 수산발전기금과 관련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수산발전기금사무국)으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 사업체계는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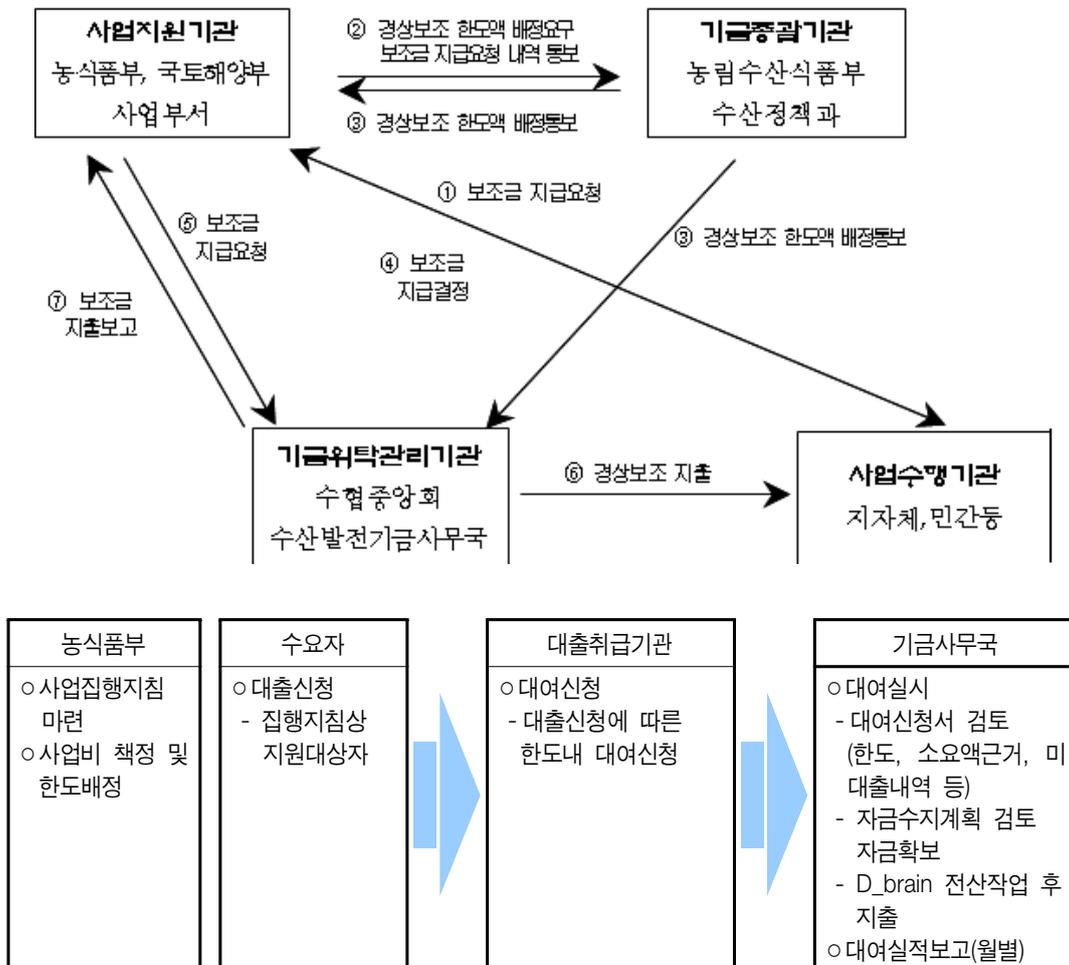
〈그림 4-1〉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주체 및 사업체계

- 수발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로,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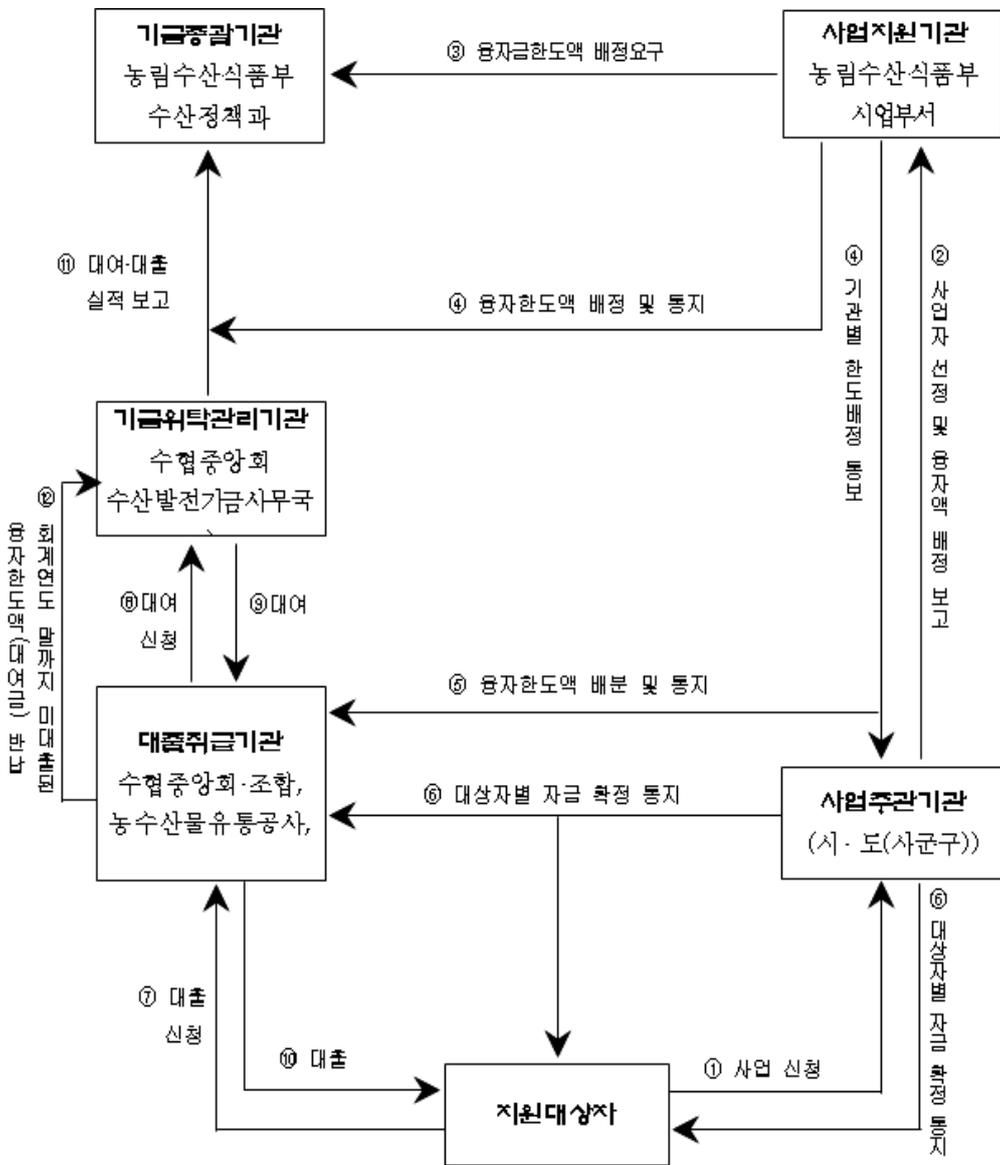


〈그림 4-2〉 수산발전기금의 관리운영주체 및 체계

- 수협중앙회(수산발전기금사무국)는 법률에 의거해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수입(납입고지 및 수납)/지출(대여금 관리 및 D-brain조작)
 - 예산(기금운용계획수립)/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여유자금 운용(여유자금운용계획수립, 자산운영위원회 운영)
 - 기타 규정관리, 기금평가 수검 등 사무 업무
 -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은 총 6명(국장 1명, 과장 2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됨
- 한편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집행체제는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3〉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집행체계



〈그림 4-4〉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집행체계

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1) 기금사업의 용도

- 수산업법 제79조에서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를 총 14개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 기르는 어업의 육성
 - 어업경영자금의 융자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 수산물의 보관·관리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새로운 어장의 개발
 -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등의 지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기타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대부분의 타 기금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관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 즉,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 규정만으로는 기금의 고유목적에 파악하기는 힘들

2)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 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지원형태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 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해양환경보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 경영지원,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환경보전분야에는 폐기물 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있음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분야에는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됨
 - 수산경영 지원 분야에는 양식어업지원, 노후 원양어선 대체,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사업이 포함됨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분야에는 수산물수매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사업이 포함됨

〈표 4-1〉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 경상사업	
○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DB관리로 해양환경개선 도모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 조업 중에 발생된 페어망·그물 등 수거
○ 비축사업	-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 출하조절	- 김, 넙치, 전복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업계 자율적 생산조정, 출하조절 기능강화 및 수산업 관측
○ 연안 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 바다나 내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어구, 낚추 및 퇴적쓰레기 수거로 어선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생계소득 및 안정(지자체)	-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따른 어가생계 안정비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 한미 FTA이행에 따른 수산물 수입증가로 국내수산물 가격이 80% 이하로 하락되는 품목에 가격 보전
○ 폐업지원금	- 한미 FTA이행으로 경쟁력을 상실 또는 피해가 우려되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
□ 용자사업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용자)	-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지원(용자)	- 양식어업 기반구축을 위한 노후시설개량 등 지원 - 수협사료시설운영지원으로 원활한 경영개선 도모
○ 노후원양어선대체(용자)	- 노후 원양참치선망어선의 신조대체자금 지원으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 원양어업관리회사(용자)	- 중소기업규모의 원양선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원양어업관련회사의 어획물의 운반·가공·판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 노후 원양어선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으로 원양업체 경쟁력 제고
○ 순환어과식양식시설(용자)	- 양식시설을 고밀도 순환어과식으로 전환하여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 수산물수매지원	-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	- 수출용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
○ 가공시설 및 운영	-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가공 산업 육성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소요자금 지원으로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해외어장 및 수산자원 확보
○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	-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

- 해양기금수입원(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인 해양환경보전사업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경상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성격에 따른 회계 재조정되었음
 - 다기능 청소선 운영 지원, 수산동물 질병관리,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중단 및 농특회계로 이관되었음
- 노후 원양어선 대체사업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대체를 통한 선박안전성 확보 및 장비 현대화로 원양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 도모를 위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였음
 - 해당 사업의 2008년 사업비는 10억이었으나 2010년 163억 원으로 확대됨

〈표 4-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종류(최근 3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해양환경 보전	폐기물 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연구	해양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연구	
	폐기물해양배출 흥계통발어업 피해지원		
		다기능 청소선 운영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 개선	
수산물유 통 및 안전관리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비축사업
		수산동물질병관리 (경)수산동물질병관리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수산 경영 지원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어업인후계자 육성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소득보전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활어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구입지원	활어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구입지원	
	관리회사제도도입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생계소득 및 안정	생계소득 및 안정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기금용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해외수산물시설투자지원	해외수산물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합 계	총 25개 사업	총 28개 사업	총 20개 사업

3) 자원 조성

- 수산발전기금은 2010년 말 현재 누적 8,27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 수산발전기금이 설립될 당시 120억 원 규모에 비하여 68배가 늘어났고 연평균 약 60%가 증가한 것임
 - 이는 매년 신규재원이 포함됨으로써 자체수입이 연평균 49.3%씩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신규재원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200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2005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시(2006년), 수산물공매납입금(200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008년)등 임
- 2010년 기준으로 총 조달규모 5,756억 중 91%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정부출연금인 1%, 여유자금회수가 8.1%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의 경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수산물공매납입금, 감척어선매각대금, 용자원금회수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수산물판매수입대금, 면허료 및 수수료 등 11개 항목임

〈표 4-3〉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단위 : 억 원,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원조성액	262	848	1,737	2,508	6,662	7,010	7,496	7,852	7,988	8,279
운용규모	262	838	1,561	2,416	6,272	6,280	6,049	5,910	5,996	5,756
○ 사업비	50	587	577	975	5,114	5,429	5,200	5,270	5,515	4,995
- 경상사업			16	37	413	478	297	417	688	404
- 용자사업	50	587	561	938	4,701	4,951	4,903	4,853	4,827	4,591
○ 기금운영비		1	5	6	8	12	12	13	13	12
○ 정부내부지출										
○ 여유자금	212	249	979	1,435	1,150	839	837	627	468	749
인원현황	1	2	2	3	6	6	6	6	6	6

- 그러나 자체수입 중 용자원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 재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국토해양부 소관 수입재원으

로 222억 1,000만원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순수 자체수입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비축사업, 수산물판매대금과 수산물공매납입금이 221억 9,200만원임
- 향후 수발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신규재원 발굴 등을 통해 조성규모를 2016년에 1조 5천억 원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성목표를 1조 원으로 수정하였음
- 이를 위해 자체재원과 기타재원 조성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자체재원 조성방안으로 2007년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수산물공매납입금을, 2008년에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편입하였음
- 이외에도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으로 현행 약 4.6% 수준의 수익률을 2016년까지 연 6%까지 달성하고, 안정적인 신규재원의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표 4-4〉 수산발전기금의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획	누계	계획	누계	계획	누계								
순조성액(A-B)	222	8,209	158	8,367	161	8,528	65	8,593	177	8,770	521	9,291	722	10,013
총조성액(A)	786	11,556	718	12,313	741	13,064	726	13,780	925	14,705	1,294	15,999	1,525	17,524
◦ 출연금	150	3,069	150	3,219	150	3,369	150	3,519	150	3,669	300	3,969	300	4,269
◦ 농안기금이관		3,694		3,694		3,694		3,694		3,694		3,694		3,694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77	1,421	150	1,571	150	1,721	150	1,870	150	2,020	156	2,176	170	2,346
◦ 감척어선매각대금		253		253		253		253		253		253		253
◦ 어항토지매각대금		21		21		21		21		21		21		21
◦ 수산물판매대금	91	1,006	70	1,076	67	1,143	65	1,208	65	1,273	130	1,403	130	1,533
◦ 기타경상이전수입		16		16		16		16		16		16		16
◦ 이자수입	179	1,223	172	1,395	179	1,573	164	1,737	172	1,909	183	2,092	190	2,283
◦ 공유수면점사용료	91	431	52	482	67	550	67	617	67	684	75	759	80	839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35	206	40	246	40	286	40	326	40	366	70	436	80	516
◦ 수산물공매납입금	60	249	84	333	84	417	84	501	84	585	84	669	84	753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3	5		5	4	9	5	14	7	21	10	31	15	46
◦ 기타잡수입		3		3		3		3		3		3		3
◦ 신규재원									190	190	286	476	476	952
사용액(B)	564	3,386	560	3,945	580	4,526	661	5,186	748	5,934	773	6,707	803	7,511
◦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등	549	3,269	544	3,813	564	4,377	644	5,021	731	5,752	758	6,510	788	7,298
◦ 기금운영비	15	117	16	132	16	148	17	165	17	182	15	197	15	213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내부자료

4) 운용 현황

- 2010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5,756억 원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고, 사업비도 4,995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액 편성되었음
 - 경상지출 404억 원(2009년 대비 41.3% 감소), 용자지출 4,591억 원(2009년 대비 100% 감소), 여유자금운용 749억 원(2009년 대비 60.0% 증가)으로 편성되었음
- 경상사업과 용자사업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2010년 전체 운용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운용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표 4-5〉 수산발전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2010년)

단위 : 억 원

조 달		운 용	
계	5,756	계	5,756
○ 자체수입	5,233	○ 사업비	4,995
○ 정부내부수입(출연금)	55	○ 기금관리비	4
○ 차입금		○ 사업운영비	8
○ 여유자금회수	468	○ 정부내부지출	-
		○ 여유자금운용	749

(1) 경상사업 부문

- 2010년 경상사업 총 지원비는 500억 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이 경상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26.0%) 차지하고 비축사업(21.6%)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21.2%)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2010년 기준 경상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은 80.6%를 기록함
 - 출하조절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 100% 실적을 달성하였고, 소진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으로 나타남
 - 경상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축사업의 경우 소진율이 2009년 96%에서 2010년에서 10% 포인트 감소한 86%를 기록함
- 총 사업지원금액에서 약 26%를 차지하는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에 총 130억이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15억이 지원되어 되었음

〈표 4-6〉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 규모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10년			집행률 (a/b)
	계획 (a)	비중	실적(b)	
경 상 사 업	50,080	100%	40,380	80.6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4.6	2,180	94.8%
○ 해양폐기물정화산업(민간)	10,600	21.2	7,420	70%
○ 해양폐기물정화산업(지자체)	3,000	6.0	6,180	206%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3,000	26.0	11,500	88.5%
○ 비축사업	10,800	21.6	9,319	86.3%
○ 출하조절사업	3,781	7.5	3,781	100.0%
○ 생계소득 및 안정	99	0.2	-	-
○ 소득보전직불금	1,500	3.0	-	-
○ 폐업지원금	5,000	10.0	-	--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2) 용자사업 부문

- 2010년 기준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약 4,63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중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사업에 1,475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 용자사업의 31.8%를 차지하였음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사업은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대출금리 3~4%, 1년 상환임
- 우수수산물지원사업에는 1,340억이 지원되어 용자사업에서 28.9%를 차지하였음
 - 수출용 원료구입자금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대출금리 2~4%, 1년 상환조건임
- 그러나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사업은 지원 실적이 전혀 없음

- 기금의 용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상환이 대부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 등 장기상환을 지원조건으로 함
 - 금리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3~4% 수준을 지원조건으로 함

〈표 4-7〉 수산발전기금 용자사업 지원규모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10년			집행률 (a/b)
	계획(a)	비중	실적(b)	
용 자 사 업	463,790	100	459,085	99%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1,875	2.6	11,875	100
○ 양식어업지원	7,699	1.7	7,699	100
○ 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	16,376	3.5	16,376	100
○ 원양어업관리회사제도도입	3,000	0.6	-	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00	0.2	-	0
○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700	0.2	-	0
○ 수산물수매지원	110,440	23.8	110,440	100
○ 우수수산물지원	134,000	28.9	134,000	100
○ 가공시설및운영지원	29,600	6.4	29,600	100
○ 해외수산시설투자	1,600	0.3	1,600	100
○ 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지원	147,500	31.8	147,495	100.0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3) 여유자금 운용

- 수발기금의 5년 평균(2005~2009년)의 여유자금액은 평잔 기준 998억 원 이고 평균수익률은 4.61%임
 - 이는 농축수산물 관련 총 9개 기금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재해기금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임
- 향후 자산배분을 통한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2016년까지 연 6% 수익률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

〈표 4-8〉 기금별 여유자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평균
농안 기금	여유자금	1,538	1,790	2,435	3,526	3,525	2,563
	수익금액	51	75	122	191	128	113
	수 익 률	3.34	4.21	5.01	5.42	3.64	4.42
농지 기금	여유자금	853	899	1,587	514	11,540	4,248
	수익금액	27	34	79	31	462	198
	수 익 률	3.18	3.82	5.00	6.03	4.00	4.66
축발 기금	여유자금	3,763	2,898	3,081	1,998	606	2,469
	수익금액	131	125	154	117	21	110
	수 익 률	3.49	4.32	5.00	5.86	3.38	4.45
쌀직불 기금	여유자금	1,021	438	238	318	1,026	608
	수익금액	35	17	11	13	9	17
	수 익 률	3.40	3.89	4.50	6.48	3.55	2.80
FTA 기금	여유자금	466	558	520	563	939	609
	수익금액	16	25	26	32	31	26
	수 익 률	3.34	4.40	5.07	5.72	3.32	4.27
재해 기금	여유자금	95	348	574	835	1,088	588
	수익금액	4	16	29	48	73	34
	수 익 률	3.88	4.66	5.04	5.78	6.72	5.79
양곡 기금	여유자금	352	890	837	1,029	1,146	851
	수익금액	11	32	38	57	34	34
	수 익 률	3.0	3.54	4.50	5.54	2.94	4.0
수발 기금	여유자금	1,439	1,132	1,048	780	590	998
	수익금액	55	50	54	46	24	46
	수 익 률	3.80	4.38	5.14	5.93	4.07	4.61
양식 기금	여유자금	-	-	-	-	37	37
	수익금액	-	-	-	-	1	1
	수 익 률	-	-	-	-	3.80	3.80
합 계	여유자금	9,527	8,953	10,320	9,563	20,497	12,971
	수익금액	330	374	513	535	783	579
	수 익 률	3.46	4.18	4.97	5.59	3.82	4.46

주 : 평잔기준 산출액임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내부자료

3.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 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됨
 - 국가재정법 제82조 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매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운용평가는 계획·관리·성과/환류의 12개 공통지표로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는 방식임
 - 2009년 평가부터 한국조세연구원이 협력하여 부처 자체 평가를 검토하여 자문하는 형태로 바뀌었음
 - 평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뉘는데, 수산발전기금은 사업운영부문에서 평가함
-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평가는 정책 적합성 분석과 중복·유사성 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
 - 정책 적합성은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과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
 - 중복·유사성은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1) 기금사업의 운용 평가

-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용부분)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금의 평균 점수는 60.6점으로 전년(64.3)보다 하락하였음
 - ‘우수’사업이 3.0%(4개), ‘보통’사업이 65.2%(86개)였으며, 경제 분야 13개 기금(사업 수 45개)의 평균 점수는 62.2점임
- 수산발전기금은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보통, 2개 사업은 미흡, 1개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전체 45개 사업 중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이 불과 2개에 불과함에도 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미흡 분야의 비율로만 본다면, 경제 분야 기금 13개 중 12위임

〈표 4-9〉 경제 분야 13개 기금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단위 : 개

기금명	사업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	0	0	7	1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0	0	1	0	0
수산발전기금	6	0	0	3	2	1
축산발전기금	6	0	0	2	3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	0	1	2	2	0
농지관리기금	2	0	0	2	0	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	0	0	1	0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	0	0	2	1	0
대외경제협력기금	2	0	0	2	0	0
전력산업기반기금	6	0	1	3	2	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	0	0	2	0	0
수출보험기금	1	0	0	1	0	0
국민주택기금	2	0	0	2	0	0
합계	45	0	2	30	11	2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사업운영부문 -, 2010. 5

- 미흡한 사업은 어업경영자금지원, 유통·가공시설지원이며, 매우 미흡은 수산물유통자금지원임
 - 유통가공분야의 지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4-10〉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별 운용 평가 결과

구분	2009년 예산 (억 원)	사업유형	점수	등급
수산물가격안정	민간보조	민간보조	63.5	보통
	융자	융자	61.5	보통
어업경영자금지원	339	융자	58.5	미흡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67	융자	64.7	보통
유통·가공시설지원	306	융자	58.5	미흡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475	융자	48.5	매우미흡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사업운영부문 -, 2010. 5

- ‘미흡’으로 평가된 어업경영자금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총 세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① 목표치 설정 근거의 합리성 미흡, ②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실적 미비, 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평가 인정 곤란임
 - 문제점 중 ②는 실제 기금 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①의 경우는 ‘과 ③은 평가를 위해 제시된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사업운용과는 관계 없이 평가된 것임
 - 특히 <표 18>의 ‘항목 3-3’의 결과는 ‘항목 4-2’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인 평가 저하를 불러옴
 - 결국 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된 것은 목표치 설정과 고객만족도의 평가자료 인정 문제와 같은 평가 자료상의 문제가 원인임

<표 4-11> 어업경영자금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항목	질 문	답변근거 종합	점수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지 여부	○ 목표치 설정 근거 합리성이 미흡 * '09년 목표가 '08년 실적보다 보수적, 목표치 설정 근거도 비합리적	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고객만족도 조사는 인정 곤란	0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3-3이 “아니요”이므로 지침상 “아니요”에 해당	0
4-3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실적 미비	0

- ‘미흡’으로 평가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본 항목도 지적된 문제점이 ① 목표치 설정 근거의 합리성 미흡, ② 예산절감 대상이 아님, 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제출 관련 보고서의 평가 인정 곤란임
 - 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미흡’으로 평가된 것은 사업운용과는 관계 없는 평가 근거의 문제임
 - 또한 ②는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결과로 인해 ‘0’점 처리한 것은 평가체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2〉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항목	질 문	답변근거 종합	점수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지 여부	○ 목표치 설정 근거 합리성이 미흡	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고객만족도 조사는 인정 곤란 ○ 제출 관련보고서는 심층적인 사업평가로 인정 곤란	0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3-3이 “아니요”이므로 지침상 “아니요”에 해당	0
4-3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예산절감 대상이 아님	0

-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수산물 유통 자금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문제점은 ① ‘08년 실적보다 목표치가 낮고, 구체적인 사업 활동에 의한 목표치 설정 근거 미흡, ②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미흡, ③ 예산절감 실적 없음, ④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가 인정 곤란의 사유임
 - 수산물 유통 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세 가지 문제점은 앞서와 비슷하였으나, ②의 모니터링체제가 ‘0’점 처리되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표 4-1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사업운용 평가 결과

항목	질 문	답변근거 종합	점수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지 여부	○ 제시한 지표 모두 ‘08년 실적보다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인정 곤란 ○ 목표치 설정 근거 미흡	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미흡	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고객만족도 조사는 인정 곤란	0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3-3이 “아니요”이므로 지침상 “아니요”에 해당	0
4-3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시장금리 인상으로 수요자 증가, 사업비 부족으로 실적 발생 없음	0

- <표 4-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치의 의욕성’과 ‘객관적, 종합적 평가’의 두 가지 지표만 개선하더라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사업 운용평가는 적절한 ‘목표치’와 ‘평가 방법’을 고안하는 것만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음

<표 4-14>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별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구분	평가 지표	배점	수산물 가격안정		어업경영 자금지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유통가공 시설지원	유통자금 지원	
			보조	융자					
계획 (30)	사업 (15)	목적 명확, 타당성	5	3.75	3.75	3.75	3.75	3.75	3.75
		타 사업 유사중복성	5	3.75	3.75	3.75	3.75	3.75	3.75
		내용/추진 효율, 적절성	5	3.75	3.75	3.75	3.75	3.75	3.75
		보조지속여부 재검토	5	3.75	3.75	3.75	3.75	3.75	3.75
	성과 (15)	지표와 목적의 연계성	7.5	7.5	7.5	7.5	7.5	7.5	7.5
		목표치의 의욕성	7.5	0	0	0	0	0	0
관리 (20)	재원 계획 대비 집행	5	4	4	4	5	4	4	
	모니터링 통한 문제 개선	10	8	8	8	10	8	0	
	객관적, 종합적 평가	5	4	0	0	-	0	0	
	보조지속여부 재검토	5	0	4	4	5	4	4	
성과/ 환류 (50)	지표의 목표치 달성	30	10	10	10	11.1	10	10	
	사업의 효과적 수행	5	5	0	0	-	0	0	
	효율성 제고	5	0	5	0	0	0	0	
	평가 및 외부지적 환류	10	10	10	10	11.1	10	10	
합 계		110	63.5	63.5	58.5	64.7	58.5	50.5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사업운영부문 -, 2010. 5

2) 기금사업 존치 평가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평가하며, 평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설치되어 운용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를 재평가하여

-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제도 개선 및 혁신에 기여
- 2010년에 실시된 기금존치평가에서 수산발전기금은 ‘존치’로 평가받았음
 - 존치평가는 ‘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 등으로 판정하여 종합의견을 제시
 - ‘존치’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정부부처의 예산사업과 중첩되는 일부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업운영 효율화 권고를 받았음
- 기획재정부의 201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발전기금의 권고사항은 다음의 네 가지임
 - ① 기금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 필요
 - ② 해양환경개선사업은 일몰시기 혹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시기를 설정
 - ③ TAC 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도 구조조정 완료시기 설정
 - ④ 기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 기금존치평가의 권고사항은 사업의 적합성과 중복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지만, 기금운용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1) 정책 적합성 분석

- 정책 적합성은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과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으로 나뉨
 -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처음과 달리 현재에도 유효한지, 민간사업과의 차별성은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임
 -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은 기금형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으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를 평가하는 것임

가.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의 유일한 기금으로서 수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의 기여도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개선사항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가 제안됨
 - 성과관리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추진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적합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계획대비 실적으로 평가한 성과관리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계통출하비율, 양식업 생산량 등의 성과지표는 본 기금사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 정성적 평가내용을 보다 정량화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순환여과식양식시설, 어망생산운영자금,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원양어선설비현대화 등의 사업과 같이 다수의 소액사업이 많아 사업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을 통합하여 기금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표 4-15〉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구 분	기금사업 관련지표	목표치		개선 필요성
	지표 내용	설치 당시	2009년 현재	
정량적 평가	수산물 계통출하율	52.3	51.4%	지표의 개선
	어업인후계자	14,147	18,246	부적합한 지표
	TAC 참여 어업인(척)	272	1,460	최종 목표치 부족
	양식생산량	656천 톤	1,353천톤	부적합한 지표
정성적 평가	- TAC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로 어획량 증가 -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조성 - 수산물유통의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 -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획량 증가			정량적 지표로 개선 필요

자료 :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2010. 6

나.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

- 기금사업이 광범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기금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많은 사업을 '10년부터는 폐지 혹은 농특회계로 전환으로 사업범위 축소 전망됨

○ 각 사업별 적합성은 다음과 같음

[기금사업 유지]

- 해양환경개선사업,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은 유지
- 수매비축보다 자조금사업의 지원을 확대

[예산사업 전환 필요]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 수산업관측사업 등은 전환
- 출하조절사업은 자조금 지원확대 등으로 전환

[전환 권고]

- 양식어업지원사업은 기금사업 유지와 예산사업의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 전환 가능
- 양식업 육성 사업은 농특회계에서 실시하고 있어 예산사업 전환 가능
- 소득보전직불금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폐지나 통합 검토]

- 금지보조금 예상 사업은 폐지계획을 수립 필요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사업은 기금사업 추진여부 검토 필요
- 소액사업이 많으므로 사업 통폐합 및 세부사업 내 세부내역사업으로 관리

(2) 중복·유사성 분석

가.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

- 예산사업 전환 실적으로 인해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많이 해소됨
- 그러나 일부는 예산사업 전환이 더 효과적임
 - 수산관측사업,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등은 예산사업 전환
 - 예산사업 중 해외수산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유지

나.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수산발전기금과 중복성 및 유사성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등이 있음
- 사업 수행 시 수혜자 및 사업대상, 기금의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으며, 수산분야에 특화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 사업체제 개편의 목적은 기금 특성을 활성화, 기금정책 및 국내외적인 여건에 부응하여 수산발전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함
- 기금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과 달리 독립성과 자율성에 있음. 즉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금관리 부처의 입장에서 예산에 의한 제약을 피하여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금사업의 발굴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함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 유지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체제를 개편하도록 함
 - 즉, 경상사업이 아닌 용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fat 등과 같이 여건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할 사업 등은 신속성을 고려하여 동 기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존치평가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기금존치평가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항목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금으로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보조금의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WTO/DDA 수산보조금 금지 등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수립함

-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사업의 조정
 -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모성사업인 경상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금운용의 부실을 최소화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모성 사업인 경상사업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체제를 개편함

2) 사업체제 개편 방향

-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 방향은 크게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로 요약됨
-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 현행 사업체제 개선은 자원 조성이 적정성 강화,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및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함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으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 사업내용의 조정 및 사업 금리 조정방안,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등을 제시함
 -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함
- 신규사업 발굴
 - 수산발전기금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 수가 20여개에 불과하고, 동 기금의 특성에 부합한 사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금설치법에 부합한 사업, 기금재원과 연계한 사업, 미래 수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의 발굴과 기금존치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사업 및 대내외적인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을 폐지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함
 - 동 신규사업 발굴은 기금운용규모와 적확히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기관에서는 기금운용규모와 연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체제 개선 방안

1) 자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 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수발기금은 자원과 관련해 목적사업을 특화하여 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발기금이 특화되기 위해서는 운용사업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기 수행과제의 통폐합 및 신규사업의 도입이 수반됨
 - 현재 수발기금은 기금존치평가에서 자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자원 안정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자체수입 자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경우 향후 규제 강화로 큰 폭의 축소⁴⁾가 예상되고 있고, 유통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2016년까지의 수발기금조성계획(수정안)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자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자원의 확보가 요구됨
- 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으며 안정적 자원의 확보
 - 수산물 관세수입금
 - FTA 체결 가속화로 인한 시장 개방, 주요 수산자원 보유국의 자원자국화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후생 증대, 그리고 가격 조정을 통한 생산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라는 측면에서 수산물 관세수입금과 같은 수입이익금을 신규 재원으로 편입해 볼 수 있음
 - 축발기금의 경우 쇠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 관련사업이 위축되었다는 논리 하에 수입이익금을 재원으로 편입하였음
 - 현재 수발기금사업 중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과의 관련성도 높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협약 ’06의정서’가 2006년도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12년 이후에는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들, 2013년 이후에는 음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으로, 2012년도부터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레저용 낚시이용자 부담금 신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어로 야기되는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되는 만큼 경상사업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적절성을 찾을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재원 확보
 - 향후 한-미, 한-EU FTA에 따른 수산부문에 대한 지원(경쟁력 제고, 피해 보전)을 수산발전기금에서 시행하고, 관련 재원의 편입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현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칠레와의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기금의 지원대상 분야는 과수, 축산, 원예·식량분야 등임
 -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협정에 의거해 기금지원계획이 수정되는데, 미국, EU와의 FTA에 따른 지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음
- 여유자금의 수익률 제고
 - 여유자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예비비적 기능 이외에 수익 창출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수발기금의 경우 5년(2005~2009년) 간 평균 약 998억 원의 여유자금이 운영되어 평균 4.61%의 수익률을 거두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14%, 5.93%로 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음
 - 참고로 농림수산분야 8개 기금 여유자금(1조 2,971억 원)의 최근 5년(2005~2009년) 간 평균수익률은 4.46%로, 수발기금은 평균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어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기금재원의 확충에 보다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자산을 다양화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일례로 농림수산분야 기금 중 '재해기금'의 경우 5년 평균 약 588억 원의 여

유자금으로 약 5.79%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는데, 2005년 3.8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5.04%, 2008년 5.78%, 2009년에는 6.72%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만큼 자산투자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 수발기금이 중장기적으로 기금으로서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사업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수발기금의 경우 소액 분산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편으로 사업 운영 및 지원 효율성과 관련해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핵심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음
 - 종합자금제도(자금Pool제)는 지원용도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경영인(체)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임
 - 일례로 농안기금과 촉발기금의 경우 사업의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자금화 지원방식을 도입하였음

〈표 5-1〉 농안기금 및 촉발기금의 사업통합 사례

구 분	대상사업	통합 사업
농안기금	산지유통종합자금	산지유통활성화 + 수급안정 + 구매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시설 현대화 지원 + 농촌가공산업 육성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 지원 + 외식업체 육성 지원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창업 지원
촉발기금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산지 축산물유통 활성화 + 가축계열화 지원('05) → 브랜드가맹점지원 추가('07)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 사료제조시설 지원('07년)

- 수발기금 사업 중에서도 수산물 유통 분야에 있어 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음
 - 분산 지원되고 있는 자금의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자금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중복지원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표 5-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통합(예시)

대상사업	통합 사업
우수경영체 종합지원	우수수산물지원 + 가공시설 현대화 + 가공업체 운영자금
유통사업 종합지원	산지 유통개선 + 소비지 유통개선

3)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 기금운용평가에서 수산발전기금은 2009년도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성과 지표는 적절한 반면, 목표치 설정 근거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적극성·의욕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과거 실적에 대비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환경 변화, 사업활동 등에 대한 예측을 통해 목표 설정 근거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5-3〉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운영 평가 결과(2009년도)

사업분야	통합 사업	평가결과		권고사항
		목적 연계성	적극성	
수산물 가격 안정	- (민간)비축수산물 가격 변동율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사업활동에 근거한 목표 설정
	- (용자) 수산물 구매지원 가격 변동율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구매지원 사업 활동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
	- (용자) 지원업체 수산물 수출액	○	× · 목표의 보수적 설정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어선해양사고 증감율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원인분석결과 및 환경예측 근거 목표치 설정
	- TAC 소진율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 목표의 보수적 설정	어종별 소진율 분석, 예측 비탕의 구체적 목표치 설정
	- 수협사료 생산 공급량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어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달성 지표 설정
품목별 경쟁력 강화	- 원양어업 평균 생산량	○	× · 증가율에 대한 합리성 불인정	
유통·가공 시설 지원	- 가공업체 매출액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수산물 유통자금 지원	- (용자) 계통 출하율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 낮은 목표치	
	- (용자) 규격 출하량	○	× · 설정 근거 합리성 미흡 · 낮은 목표치	

주 : 기획재정부의 사업운용평가보고서 I(2010.5.)를 토대로 작성

- 기금존치평가에서는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된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부 정량지표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이며,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는 정량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음
 -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음

〈표 5-4〉 수산발전기금의 평가지표 개선안(예시)

구 분	기금존치평가 결과(2010년 5월)		개선 방안(예시)
	기금사업 관련지표	평가 결과	
정량적 평가	수산물 계통출하율	지표 개선	· 위판장도매시장 거래(처리) 물량 · 거래규모(금액/물량) 증가율 등
	양식생산량	부적합 지표	· 지원업체의 양식생산량 증가율 · 지원업체의 단위당 생산성 증가율 등
정성적 평가	- TAC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로 어획량 증가	정량지표로 개선 필요	· 지원업체의 개소수, 양식면적 등 · 대상품목의 가격변동율, 고객만족도 등 · 해양폐기물 수거율(계획 대비) 등
	-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조성		
	- 수산물유통의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		
	-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획량 증가		

3.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세부사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으로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정책적인 적합성과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을 근거로 예산사업 전환과 사업조정을 하는 것임
 - 둘째, 종합자금제도 도입을 전제로 세부사업을 큰 틀의 자금 Pool로 묶어 사업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1)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본 연구에서는 기금존치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의 사례와 비교하여 수산발전기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표 5-5>와 같음

〈표 5-5〉 수산발전기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구 분		2011년	기금존치 평가 보고서	조정방안	
경상 사업	수산경영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	예산사업 전환	유지(FTA사업)
		- 폐업지원금	=		유지(FTA사업)
		- 생계소득 및 안정	이관		농특회계 이관
		- (신규)어업인 영어자금 공급	신규		신규 유지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연근해어장 환경 개선	감소		예산사업 전환
		- 비축사업	증가		규모 확대
		- 수산물 자조금 지원(출하조절)	=	관측 예산사업전환 자조금 지원 확대	관측예산 출연금전환 자조금 지원 확대
	해양환경 보전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유지	유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보조)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		
용자 사업	수산경영 지원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감소	유지 혹은 예산사업의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전환	유지
		- 양식어업 지원	감소		
		-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증가	예산사업 전환	유지(FTA사업)
		-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		
		-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수산물 구매 지원	감소		구매지원 축소 민간비축 신설
		- 우수수산물 지원	=		지원방법 전환 -선택과 집중방식-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감소		확대
		-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감소		유지
		-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감소	기금사업 여부 검토	유지

(1) 예산사업 전환

-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중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표 5-6〉과 같이 경상사업 중 총 2개 사업임

〈표 5-6〉 예산사업 전환 대상의 추진방안

구 분		추진방안	
		조정 사유	농업 사례
경상 사업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전액 보조로 기금 부적합 - 어장 환경개선사업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예산사업 타당
		수산업 관측사업	- 전액 보조로 기금 부적합 - 수산업 정보사업이며, 수급조절 등 공공 목적이므로 예산사업 타당
			- 농업관측사업은 출연 금으로 전환

가.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동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바다 및 낚시터 등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침적폐기물(폐어망 등) 수거를 통한 연근해 어선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이 목적임
- 첫째, 전액 보조사업이므로 소모성 지원이며 유실/침적폐기물(폐어망 등) 수거의 경우 사업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둘째, 어장환경개선의 경우 양식어장과는 연근해 어장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어업인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예산사업이 타당함
 - 주 사업내용을 보면 어선어장의 침적폐어망 등 수거·처리, 어촌해안쓰레기 수거·처리, 해파리구제 등이며, 지원 대상이 지자체이므로 이미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함

나. 수산업관측사업

- 동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정부 예산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전액 보조사업이므로 소모성 지원이며, 향후 관측품목의 추가 등 사업 규모의 확대가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수산업관측사업은 양식수산물만을 관측하고 있으나, 향후 연근해 어획수산물 등으로 관측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사업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수산관측사업 등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사업도 있어” 라고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지원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예산 보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출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농업관측정보사업의 경우 최초에 연구용역으로 시작하였다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둘째, 수산업관측사업은 농안법 제5조(수산업 관측)에 의해 실시되는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고,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금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출연금으로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 내용의 조정

- 사업 내용의 조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모두 다섯 가지로, <표 5-7>과 같음

〈표 5-7〉 조정 대상사업의 추진 방안

구 분			조정방안	
			조정 사유	농업 사례
경상 사업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비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상 수산물 생산의 1% 미만 규모로 사업 효과 한계 · 사업 규모 확대 및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 필요 	
		수산물 자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수급조절 품목 확대 통해 비축사업 한계 극복 · 현재 조성된 자조금 대비 지원이 아닌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사업 한계 · 사업 규모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된 자조금 대비 지원인 매칭펀드 형식 · 축산발전 기금 등 기금 조성 ·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용자 사업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구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구매지원은 실효성에 제약이 있어 축소 필요 · 민간에 집중 지원하여 규모를 확보하고, 비축사업과 연계하여 효과 확대 ·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 	
		우수 수산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수산물 구매지원은 정부의 세계화 및 6차산업화 목적에 맞는 업체에 지원하고, 지원규모 확대 ·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출하 지원을 위해 확대 필요 	

가. 비축사업

- 동 사업은 2011년에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명태, 오징어, 고등어의 3개 어종에 대해 2011년 국내 소비예상량의 0.70% 이상 비축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정시기에 대량 어획·홍수 출하되고 비어획기가 있는 계절성 어종으로서 비축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따라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축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WTO/DDA 수산물보조금 금지대상이므로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을 신설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나. 수산물 자조금 지원

- 동 사업은 농안법 제7조의 자조금 적립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사업목적은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 품목별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자율적 수급조절 품목의 확대를 통해 비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주도의 수급조절을 지향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농업과 같은 매칭펀드 방식과 같이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농업분야에서는 조성된 자조금 대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축산발전기금 등의 별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 내에서 조달하기에는 사업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지원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금 내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수산물 수매 지원

- 동 사업은 민간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용자사업임
 - 용자 대상은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생산자단체 포함)
 -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민간 수매지원은 수매에는 효과가 있으나, 방출에 대한 실효성에 제약이 있는 방식임
 - 다수의 사업자가 소량의 수산물을 비축하고, 방출하고 있어 적기에 신속한 수급조절이 어려움

-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하여 수산물을 수매하는 방식보다는 소수의 민간단체에 집중시켜 수매와 방출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축사업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 수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라. 기타 용자사업

- 우수수산물 지원은 수산물 수출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수산물을 구입·가공하여 수출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및 수출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인, 수산보조금 금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 정책은 세계화 및 6차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육성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의 성격에 맞는 수출업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동 사업에 대한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은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함
 - 동 사업은 생산자 출하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지만, 용자 대상의 담보 능력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규모 대비 사용량이 적고, 금리도 3~4%로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음
 - 금리에 대한 부담은 결국 생산자 수취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지원조건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3) 사업 금리 조정

- 재원 손실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쉽게 낮출 수 없어 수발기금의 이자율이 농업 등 타 1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산정책자금금리는 2~4%로 평균 3%이나,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1~4%로 평균 2~3%대이며, 평가에 따른 무이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자금 사용시 생산자의 비용 부담과 더불어 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용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표 5-8〉 수산발전기금과 농안기금의 금리 비교

수산발전기금		농안기금 등		
사업명	금리	사업명	금리	비고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3%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지원	3%	
양식어업 지원	3~4%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3%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3%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3%	과원영농규모화사업	2%	FTA 기금
순환어과식 양식시설 지원	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5	FTA 기금
수산물 수매 지원	3~4%	소비지유통활성화 직거래매취자금	3~4%	
우수수산물 지원	2~4%	운영활성화 지원	3~4%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3~4%	산지유통활성화	1~3%	무이자 인센티브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3~4%	산지유통종합자금	1~3%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4%	해외농업개발사업	2%	농어촌공사

- 사업 금리조정방안은 다음의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함
 - 첫째,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 중 시설자금이 아닌 경우와 생산자에게 비용 전가 정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1~2%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둘째, 생산자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지원, 가공 및 유통 지원 중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없는 경우는 현행체제를 유지함
- 이상의 두 가지 기준으로 각 사업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5-9〉 수산물발전기금의 금리 조정 방안

현행		조정(안)			
사업명	금리	생산자 영향	국제협상 피해대책	시설자금여부	조정금리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3%	◎	◎	××	1~2%
양식어업 지원	3~4%	○	◎	○	1~2%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4%	○	◎	◎	1~2%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3%	△	○	××	3%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3%	△	△	◎	3%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	3%	×	×	◎	3%
수산물 구매 지원	3~4%	○	△	××	2~3%
우수수산물 지원	2~4%	○	△	××	2~4%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3~4%	◎	◎	××	1~3%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3~4%	△	○	○	3~4%
해외 수산물 투자 지원	4%	××	○	◎	3~4%

주 : 영향이나 중요성 정도에 따라 매우 큼(◎), 큼(○), 보통(△), 적음(x), 매우 적음(××)

(4) 수산물보조금 논의 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

- 또한 수산물 구매 지원사업은 WTO/DDA 수산물보조금 논의 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연구에서는 금지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분류나 논의 동향 분석에 따른 대안의 제시 등은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비축사업과 구매지원 등에 대한 것만으로 한정함
- 금지보조금으로 포함되는 사업 중 비축사업, 구매지원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등은 수산물의 구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동 사업은 내용을 달리하여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유지함
 - 동 사업들의 생산자 가격지지로 인한 자원감소 영향이 문제가 되므로 역할을 새로이 규정하여 국민들에 대한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전환
 -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되, 생산자단체가 주가 되고 소비자단체와 연합하여 피쉬플레이션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물가안정수단으로 활용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등은 포장비와 중도매인운영자금, 생산자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수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활용
- 각 사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 수발기금의 소액 분산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산업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자금제도(자금Pool제)의 도입이 필요함
 - 이는 기존 사업이 경직된 사업 내용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 사업신청자나 지역여건, 어업종류, 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정해진 동일한 사업의 틀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자금성격과 사업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금화 지원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은 기존의 수매비축과 수매지원 등을 통합하여 물가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정부주도의 사업도 전부 민간으로 이양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수산업 구조개선사업은 기존의 수산경영지원, 해양환경보전, 유통 및 안전관리의 일부 등을 통합하여 수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총괄하여 지원함
- 사업의 지원 및 집행방식은 다음과 같음
 - 품목별 대표조직이 자율적 수급조절과 홍보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 기존 사업에서는 수산물 자조금 지원, 수산물 수매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등을 따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 종합자금제도에서는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내용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표 5-10〉 수산발전기금의 종합자금제도 도입(안)

기존 사업			종합자금제도		
			명칭	사업 Pool	집행방식
경상 사업	수산경영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수산물 물가안정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수산물 구매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신청 자가 취 사·선택 하여 사 업구상
		- 폐업지원금			
		- (신규)어업인 영여자금 공급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연근해어장 환경 개선			
		- 비축사업			
		- 수산물 자조금 지원(출하조절)			
	해양환경 보전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보조)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용자 사업	수산경영 지원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수산업 구조개선	수산경영 지원사업 해양환경 보전사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사업 신청 자가 취 사·선택 하여 사 업구상
		- 양식어업 지원			
		-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 수산물 구매 지원			
		- 우수수산물 지원			
		- 산지 및 소비지 유통 개선			
		- 가공시설 및 운영 지원			
		-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4. 신규사업 발굴

1)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및 개요

(1) 신규사업 발굴 원칙

- 수산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용도에 적합한 사업 발굴
 - 기금사업은 기금설치법에서 명기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책 적합성이 있음
- 기금재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 기금사업은 가능한 한 기금재원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자원조달의 목적과 부합
- WTO 금지 수산보조금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발굴
 - 국내외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기금사업 운용에 적합
- 미래 수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수산발전기금의 목적이 수산업의 발전에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
- 기금존치 평가에서 지적한 사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 기금존치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동 기금의 존치의 적합성 증진
- 기금의 존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상사업의 가능한 한 배제
 - 기금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경상사업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함. 단, 기금 재원의 목적상 경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경상사업화

(2) 신규사업 발굴 개요

- 수산발전기금의 신규사업으로서 위의 원칙을 기준으로 9개 분야에 대한 총 16개 사업을 제안함
 - 사업은 지원형태에 따라 2개의 경상사업, 1개의 경상·용자사업과 13개의 용자사업으로, 추진기간 기준으로는 4개의 단기사업과 12개의 중장기사업으로 구성

〈표 5-11〉 수산발전기금 발굴 신규사업 개요

구 분	기존사업(2011년)		신규사업	
	사업명	지원형태	사업명	비고
1. 어업 구조조정 촉진	1.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2.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 용자 - 용자	1. 어선리스사업 2. 수산장비 임대사업	- 신규 - 농특
2. 기르는어업 육성	3. 양식어업 지원	- 용자	3.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4. 신품종 개발 및 중요생산	- 신규 - 신규
3.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4. 어업인 영여자금 공급	- 용자		
4. 수산물유통 구조 개선	5. 우수수산물 지원 6. 산지 및 소비자 유통개선	- 용자 - 용자	5. 산지 위판장 현대화 6.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7.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 신규 - 광특 - 광특
5. 수산물 생산 및 출하 조절	7. 수산물 수매 8. 비축사업 9. 수산물자조금	- 용자 - 경상 - 경상	8.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 통합 및 신규 ⁵⁾
6. 수산물 보관·관리			9. 수산물 물류사업	- 신규
7. 해양환경개선	10. 연근해어장 환경개선	- 경상		
8. 해양심층수 연구 개발			10.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 신규
9. 새로운 어장 개발	11. 해외수산물시설투자	- 용자	11.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12.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13. 글로벌수산물기업 육성	- 신규 - 신규 - 농특
10.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12. 가공시설 및 운영	- 용자	14. 전통 수산물가공업 15. 세계 수산식품 개발	- 신규 - 신규
11. FTA 발효 어업인 지원	13.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14. 원양어업관리회사 15. 폐업지원금 16. 소득보전직불금	- 용자 - 용자 - 경상 - 경상	16. FPC 건립사업	- 신규
12.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17.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18. 해양폐기물 정화(민간 보조) 19. 해양폐기물 정화(지자체 보조)	- 경상 - 경상 - 경상		
합 계	19개 (경상 8개, 용자 11개)		16개 (경상 2개, 경상/용자 1개, 용자 13개)	

- 신규사업을 포함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은 총 32개로 사업이 확대됨
 - 사업은 지원형태에 따라 9개의 경상사업, 1개의 경상/용자사업, 22개의 용자사업으로 구성됨

〈표 5-12〉 수산발전기금 사업개편(안)

기금용도	사업명	지원형태	계속성	추진기간
어업구조조정 촉진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용자	계속	단기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용자	계속	단기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용자	계속	단기
	어선리스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장비 임대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기르는 어업 육성	양식어업 지원	용자	계속	단기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용자	신규	중장기
	신품종 개발 및 증묘생산	용자	신규	중장기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어업인 영어자금 공급	용자	계속	단기
수산물유통 구조개선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용자	계속	단기
	산지 위판장 현대화	용자	신규	단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경상/용자	신규	중장기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	수산물자조금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용자	신규	단기
해양환경 개선	연근해어장 환경개선	경상	계속	단기
새로운 어장개발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	계속	단기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글로벌수산기업 육성	용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가공업 육성	가공시설 및 운영	용자	계속	단기
	전통 수산물가공업	용자	신규	중장기
	세계 수산식품 개발	용자	신규	중장기
FTA 발효 어업인 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용자	계속	단기
	폐업지원금	경상	계속	단기
	소득보전직불금	경상	계속	단기
	FPC 건립사업	경상	신규	단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민간보조)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 보조)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보관·관리	수산물 물류사업	용자	신규	중장기
해양심층수 연구 개발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경상	신규	중장기
합 계		총 32개(경상 9, 경상/용자 1, 용자 22) (단기 19, 중장기 13)		

5) 기존의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을 수산물 물가안정사업으로 통합

2) 단기 신규사업

(1)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 사업의 목적

- 민간사업자에 대해 수산물 구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물가안정 대상 수산물의 수급 조정 물량 확보

〈표 5-13〉 정부 비축 및 민간구매비축(안)과의 차이점

비 고	정부비축	민간구매비축(안)
자금지원	정부자금	용자+자담
사업시행	정부	민간사업자
구매품목	정부 지정(고등어, 오징어, 명태)	정부 지정 및 사업자 결정
손실부담	정부	민간사업자

○ 주요 사업내용

- 구매비축의 보완사업으로서 정부 물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방출지시에 따라 방출
- 구매품목
 - 의무비축 품목 및 물량 : 정부 결정(사업규모의 50% 수준)
 - 기타 구매물량 : 민간사업자 결정
- 비축기간
 - 의무 비축분 : 3개월 이상~12개월 이내
 - 기간별 의무 비율 : 3개월 70%, 6개월 50%, 9개월 30%
설, 추석 등 물가 안정 기간에 의무구매품목 집중 방출
- 방출방법
 - 의무방출 물량 : 공판장, 도매시장, 바다마트, 직거래장터, B2B 등
 - 기타 물량 : 민간사업자 자율 판매(연간 2회전)
- 손실부담방법
 - 사업 손실 : 민간사업자 부담
 - 수익 : 일정액의 기금 적립으로 손실 보전에 충당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지원조건 : 무이자(사업자 손실 부담), 융자 80%, 자부담 20%

〈표 5-14〉 수산물 민간비축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이후
합계	100,000	100,000
융자	80,000	80,000
자담	20,000	20,000

(2) FPC 건립사업

○ 사업의 목적

- 총 202개 위판장이 연근해수산물 60%를 유통하고 있으나, 응집력이 부족하여 규모화, 가격교섭력 발휘에 한계
-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여 규모화, 상품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매유통 점유율 확대, 가격교섭력 강화 필요
- 대형 위판장을 복합기능을 가진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로 개선하여 중소형 위판장과 소비지 구매처를 연결하여 유통허브 역할 수행

○ 주요 사업내용

- 위판량/시설규모가 대형인 위판장을 선정하여, 산지 및 소비지시장 복합형 광역 대형 거점 FPC로 육성
- 물류인프라 확충 및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으로 광역유통기능을 수행
-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하의 5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

〈표 5-15〉 FPC의 선정 요건

구 분	조 건
취급규모	연간 8만 톤 이상의 취급규모를 가질 것
소비지 인접성	산지이면서 주요권역, 대도시에 인접할 것
산지 접근성	권역내 산지 위판장과 물류접근성이 좋을 것
부지/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취급이 가능한 부지 보유 냉동창고 등 관련시설이 있거나 설치 가능할 것
배후지 활용도	시장 주변에 가공업체 등이 입지할 배후지가 충분할 것

- 유통허브이면서 광역유통시장으로서 도매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표 5-16〉 FPC의 필요시설

구 분	필요시설 및 기능
양육 및 선별	자동선별기, 컨베이어시설, 선별작업 공간 등 양육 및 선별을 위한 기본 시설
경매장	온도관리가 가능한 폐쇄형 경매장이 있을 것
전처리시설	소규모 식품업체 HACCP 기준에 맞는 온도관리, 위생관리 시설을 갖춘 간이 가공시설
포장, 배송작업장	위생적 시설을 갖춘 일관 작업체계의 포장 및 배송을 위한 별도 시설
냉동창고	급속냉동시설, 일정 규모의 냉장시설 해수얼음 공급시설
활어수조	활어의 수배송, 일시보관을 위한 시설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중대규모 위판장 10개를 선정하여 2012~2016년까지 건립
- 개소당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

〈표 5-17〉 FPC 건립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량	10	2	2	2	2	2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보 조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지방비	15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자 담	100,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산지 위판장 현대화

○ 사업의 목적

- 기존의 위판장은 해방 이후의 개념으로 지어진 것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신설 위판장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산물의 양륙 이후의 품질·위생관리에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각 해역별로 적절한 시범사업 위판장을 정해 적절한 품질·위생관리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해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산지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상품화 수준 제고
- 상품성을 높여 산지가격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손실률 저감으로 소비자 수취가격 경감
- 산지시장을 적절한 저온유통·위생관리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해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
 - 1단계 : 최소비용으로 가능한 시설 기준으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위생 및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위판장 바닥 단차 높이기, 수산물 경매 매대 설치, 선별 및 전처리용 작업대 설치, 해수살균시설 도입, 작업 공간 구분 및 셔터(혹은 에어커튼) 설치 등
 - 2단계 : 이용도가 높은 시설 및 노후화 정도가 심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위생 및 품질, 온도관리시설, 전처리시설을 보급
 - 3단계 : 산지시장의 위생품질관리수준을 등급화하여 인증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동서남해의 3개 해역에 대해 위판장의 규모, 취급 업종과 어종, 판매형태 및 상권, 소비자와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및 중소규모 각 1개씩 6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 시범사업 이후 2020년까지 170개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
- 개소당 20~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

〈표 5-18〉 산지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이후
중 형 위판장	사업량	30	3	27
	합 계	150,000	15,000	135,000
	보 조	75,000	7,500	67,500
	지방비	45,000	4,500	40,500
	자 담	30,000	3,000	27,000
소 형 위판장	사업량	140	14	126
	합 계	280,000	28,000	252,000
	보 조	140,000	14,000	126,000
	지방비	84,000	8,400	75,600
	자 담	56,000	5,600	50,400

3) 중장기 신규사업

○ 신규사업 중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3개 사업은 다음 <표 5-19>와 같음

<표 5-19>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신규사업 개요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어선리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어선의 리스를 통해 어업 구조조정 및 조업 합리화에 의한 어업인 경쟁력 제고 어업분야 진입에 대한 초기투자금 부담 감소를 통한 어업후계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어선건조비 지원 지원대상 : 어선 건조업체 지원형태 : 융자
수산장비 임대사업(농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장비 임대를 통한 양식어업인의 부담 경감 취약지역에 대한 어업용기자재 무상 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수산 기자재 임대비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양식포함), 지자체 등 지원형태 : 보조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어장환경에 걸맞는 인공어초의 개발·제작으로 자원조성사업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인공어초 개발·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어초 제작업체 지원형태 : 융자
신품종 개발 및 종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신규 양식품종의 개발 및 우수 종묘 생산으로 양식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신품종 및 우수종묘생산업체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종묘생산업체 지원형태 : 융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광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유통시설(위판장 등) 지원 지원대상 : 수협, 기업 및 경영체, 지자체 등 지원형태 : 융자
친환경일류수산물 공급센터(광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수산물 전문 공급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물류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 물류업체 지원형태 : 융자
글로벌수산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산업의 세계화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글로벌기업인수합병 지원 지원대상 : 글로벌수산기업체 지원형태 : 융자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의 해외 어장 개발·확보로 수산물 수급의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어장개발 소요자금 지원 지원대상 : 원양어업체 지원형태 : 융자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양식어장 개발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어장개발 소요자금 지원 지원대상 : 양식업체 지원형태 : 융자
전통 수산물 가공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수산물가공품의 상품성 강화로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어가 소득 증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생산·유통·가공업자(체) 지원형태 : 융자
세계 수산식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소비자의 수요에 걸맞는 새로운 수산식품기술 개발·생산으로 국내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식품 개발 및 제조 관련 시설/운영비, 컨설팅비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지원형태 : 융자
수산물 물류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와 소비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유통 효율성 증대 현대화된 물류시설/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개선으로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수산물류 시설/장비, 물류운영시스템 도입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생산·유통·가공업자(체) 지원형태 : 융자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과의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해양심층수 관련 R&D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 지원형태 : 경상

제6장 결론

- 수산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수산부분 유일의 기금으로서 경직성 예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신속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사업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내외적으로 기금의 존치의 적합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수산보조금 금지라는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업체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그동안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의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존치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일부 사업의 중복성 및 구조조정 등 통폐합이 지적되었고, 일부 사업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저해되는 사업도 존재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설정함
 - 기금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을 살리도록 함
 - 기금존치평가에 부합하도록 사업체제를 개편함
 - 수산보조금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하도록 사업체제를 개편함
 -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사업을 조정함
- 주요 사업체제 개편안으로는 현행 사업체제의 개선,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임
 - 현행 사업체제 개선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분석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함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은 기금존치 평가서를 토대로 분석하여 개편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수립함
 - 신규사업 발굴은 예산사업 분석, 타 국내외 기금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체제 개편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폐지되어 예산사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주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 수산보조금 금지논의 동향과 연계한 폐지사업의 경우는 WTO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연계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사업체제 개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07.5.
-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2003년도 기금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12.
- 기획예산처,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04.8.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10.5.
-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 2010.5.
- 기획재정부, 「2010년도 기금현황」, 2010.6.
- 김상헌, “기금제도의 사회적 후생효과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5.
- 김수성,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9.6.
- 김태일 외, “기금평가결과에서 나타나 기금운영의 특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2003.
-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일반재정(예산)-」, 2010.8.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1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0.11.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1.1.
- 배득중,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 1996.
- 서종석 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증장기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4.10.
- 이호용, “공중위생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5.
- 정명생 외, 「수산발전기금의 증장기 발전 방향」, 2005.10.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관리효율화 방안」, 2001.12.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수산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산발전기금 발전방안 수립」, 2009.4.

한국금융연구원,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2004.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수산발전기금 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7.12.

한국조세연구원, 「기금 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6.

한국조세연구원,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2003.12.

황의식 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농안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2.

유럽수산기금시행에 관한 2008년 연차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Ex-post evalua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0~2006, 2010.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홈페이지(www.susanfund.com)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축산발전기금 사무국 홈페이지(www.ldf.or.kr)

1. 수산발전기금 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

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 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⑧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삭제 <2008.12.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증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자문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12.3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 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 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69조(중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⑤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 ⑥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목개정 2008.12.31]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 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2008.12.31>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수산업법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7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5>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2. 기르는어업의 육성
3.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7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8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9.4.1, 2009.5.27>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등"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라 함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폐업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구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 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기금의 조성)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폐업지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3.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개정 2006.10.4>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19조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20조 (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정 2007.8.3,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시행 2010.8.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21호, 2010.8.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각각 "법" 및 "령"이라 한다)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동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총괄기관"이라 함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 "기금위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업지원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4. "사업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5. "대출 취급기관"이라 함은 수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6. "보조금 집행기관"이라 함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기금사용자"라 함은 용자, 보조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9. "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10.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가. 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대여금

나. 기금관리비

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자금

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자금

제3조(적용범위) 기금 및 기금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무위탁)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
3.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4. 사업수행관리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요령)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요령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등의 수립·변경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금총괄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즉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주관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집행지침) ①사업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이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
2. 기금지원조건 및 기금지원 신청절차
3. 기금사업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4. 기타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사업지원기관은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집행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총괄기관과 협의한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집행계획)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통지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9조(기금회계기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담당 임·직원"으로 한다)은 기금위탁관리기관의 임·직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되,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지도관리상임이사로, 기금지출원은 지도관리부문 기획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계리)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국고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납입) ①기금총괄기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과 납입예정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는 즉시 납입예정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납입예정자는 기금총괄기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서 제출)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25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기준)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령, 국가회계법령, 국고금관리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4장 자산관리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원칙)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 원본의 안전성 확보

2. 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의 확보
3. 지출규모 및 시기를 예측하여 유동성 충족
4. 관련 법령 및 운용 규정상의 제한사항 준수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품에의 예치
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자금예치는 본점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지정한 서울소재 지점으로 규정한다.

③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운용 내역의 운용기간 종료 후 운용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거래유형의 제한) 여유자금의 운용시 다음 각 호의 거래유형을 제한한다.

1. 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입찰행위
2.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체결 행위
3.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거래
4. 기타 공익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

제18조(자산운용자문단)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9조(자산운용지침)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목표수익률을 비롯한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의 운용

제20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 ① 장관은 지원대상자를 관련 협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 및 기금의 대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① 장관은 당해연도 사업별 지원계획의 30%이내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예비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행하며, 예비대상자의 선정·지원은 당해연도의 기금사업에 한정한다.

제22조(지원대상자의 변경)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실적에 따른 자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에서 당초 지원금액결정시 산정한 총사업비 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사업집행지침과 제2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비율(자부담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6조제6항,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은 확인하여야 한다.

⑧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진실여부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집행지침에 정한다.

⑩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사업주관기관은 기금사용자(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이미 대여된 금액과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당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줄 것을 사업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안에 공사·구매·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안에 착공·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에 착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기타 계약행위에 착수할 것을 당해 계약서에 명시한 때
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안에 착공·납품 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착수한 때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하고, 기금총괄기관은 1월 25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대상금액을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25조(융자의 방법) ①장관은 기금을 융자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출취급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이 규정 및 기금위탁관리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 대출취급기관간의 약정 등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수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한다.

③수협중앙회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 등에 재 대여한다. 다만, 조합 등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 등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등이 이를 스스로 하거나 다른 조합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조합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26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용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등이 지원대상자에게 긴급하게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어 당해 기관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하고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에 대한 대여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집행지침 및 제23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경우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안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수협중앙회 등에 지체없이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협중앙회 등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미대출금으로 추가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금상환일을 최초 대여기간 이내로 하여 재대여 할 수 있다. 다만, 재대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 전일(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

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실제 납입이 반납기한 다음날인 경우에는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 현재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기금의 배정·인출) ①기금출납담당 임·직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기관에게 기금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위탁관리기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이체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중에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기관이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1월 2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총괄기관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체 없이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1월 3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실제 납입이 반납기한 다음날인 경우에는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지원예정금액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며 연장기간 이후에는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등(위약금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재대여 받은 기관은 다음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수협중앙회 등은 동 대출금 등을 반납하기 10일전까지 납입고지 요청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용자조건의 결정) ①용자조건은 장관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기금사용자로부터 대출기간 연장 등 용자조건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용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협중앙회 등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대출금리는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수협중앙회 등이 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협중앙회 등이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거쳐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자의 납부) ①대여금(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납할 원금과 이자(반납하여야 할 다음날부터 반납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리 적용)를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에 의한 적수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대출금(대출기간의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 등의 제출)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 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보조금은 사업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사업집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사업집행지침이나 보조금 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지원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안에 그 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한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는 경우는 그 결정 및 확정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사용자에게 당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⑥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정산확정내역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계약사무) ①사업지원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의 대행을 요청받은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관한 일건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원기관은 계약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사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사업지원기관은 계약 체결 외에 감독관의 임명, 공정관리, 검사·검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사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수협중앙회 등에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 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제36조(부당 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①수협중앙회 등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사용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②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에 의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실제납입이 반납기한 다음날인 경우에는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기관은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제3호 중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37조(위약금의 징수 등) ①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상환기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의 수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 대출금 전액
2.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의 제한)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인(어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인 때는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인 때는 3년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때는 2년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 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인 때는 1년

②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
2.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제한사유 등을 당해인,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대출취급기관,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제제의 예외) 사업주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집행상황의 확인 등) ①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사업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기금위탁관리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확인·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의무)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사업 집행 현황(매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20일 이내)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3조(일부절차의 생략) 장관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중 계속사업 등 그 성격상 일부절차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평 가

제44조(기금평가자문단 구성·운영)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기금평가자문위원(이하 "평가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기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평가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총괄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평가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편성
3.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의 성과평가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⑤평가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평가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문단의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의 실태 및 성과평가에 소요되

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의 평가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자문단의 장이 정한다.

제45조(평가의 실시) ①장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 운용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의 일부를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사용자 등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평가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기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은 성과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기금운용관리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당해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사업취소, 자금회수,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고객만족도 조사실시)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계획을 조사실시 1개월 전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원칙 및 절차, 성과평가결과 등을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